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고려시대 景靈殿의 건립과 성격 변화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맹 은 지

고려시대 景靈殿의 건립과 성격 변화

지도교수 정 요 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사 학 과

맹 은 지

맹은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고려시대 景靈殿의 건립과 성격 변화

맹 은 지

본 연구는 경령전 창건을 둘러싼 맥락과 경령전 의례의 정례화 과정에 주목하여, 원묘인 경령전의 존속 이유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왕은 즉위 이후 돌아가신 부모님을 총 세 방면[공간]에서 모셨다. 첫째 신주를 일정 공간에 안치하였고, 둘째 능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사찰에서 신어를 모시고 기신재를 행하였다. 현종 8년에 창건된 경령전은 이러한 과정 중 돌아가신 부모님인 안종과 효숙왕후의 도덕적인 문제로 신주를 태묘에 모시지 못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건립된 시설이었다.

창건 초기 경령전은 태묘를 대신하여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를 모시는 '혼전'으로 기능했다. 당시 경령전에 이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었다는 정황은 《靈鷲山大慈恩玄化寺之碑銘》에서 경령전과 현화사에 모셔졌을 때 표현의 차이, 현종 18년(1017)에 시호가 더해진 양상 등을 통해 확인된다.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를 모시기 위한 일종의 '혼전'으로 건립된 경령전은 현종말 태조와 사친의 신어가 모셔진 공간으로 형태가 변화된다. 이는 대를 넘어선 경령전 존속을 위한 현종의 조치였다. 이러한 형식의 변화는 경령전이 현종의 정통성만이 아닌 이후 현종계 왕실의 계통을 가시화한 공간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덕종은 즉위 이후 경령전에서 친히 즉위를 고하는데, 이는 경령전의 상징성에 가장 걸맞은 의례였다고 할 수 있다. 조상에 대한 즉위 주고가 천명의 승습을 보여주는 행위인 만큼, 덕종이 경령전에 즉위를 고한 것은 태조에게 내려진 천명이 안종을 거쳐 현종을 통해 덕종에게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덕종의 즉위 주고는 왕업 중흥의 상징이자 천명의 승습이라는 경령전의 상징성을 당대인들에게 다시금 인식시켜주었다. 의례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면 그 효과만큼 사람들에게 의례로 인한 상징성이 내재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고려 말까지 경령전에서 국왕에 의한 즉위 주고가 행해졌던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현종말 경령전의 성격이 변화하고, 경령전에서는 즉위 주고 외에 다양한 주고 행위들이 이루어졌다. 경령전에서는 부월 출환, 원자 탄생, 왕태자칭명입부와 같은 의례 외에도 왕자 축발, 연등회, 객사사퇴연, 경행 등 다양한 의례들이 시행되었다. 이는 태묘와 달리 국왕의 혈연적 四代考妣가 모셔지던 경령전의 봉안 원리와 궐내에 자리한 경령전의 입지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개경 환도 이후 경령전에서 행해지던 의례 행위는 축소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개경 환도 이후 이전과 달리 궐내에 존재하던 경령전의 입지적 특성이 사라지면서 단발적인 쓰임이 줄었기 때문이다.

주 요 어 : 현종, 혼전, 경령전, 즉위, 주고, 의례화, 상징성
학　　번 : 2020-27212

목 차

머리말 ····· 1

一. 顯宗初 安宗과 孝肅王后의 魂殿 건립 ····· 5

二. 顯宗末 四親之殿으로의 개편 ····· 20

三. 경령전 의례의 확대와 변천 ····· 36

맺음말 ····· 55

참고문헌 ····· 58

Abstract ····· 63

표 목 차

<표 1> 고려 왕실 조상숭배 시설별 의례 행위 ····· 27

<표 2> 태묘·제릉·경령전의 奏告 행위 비교 ····· 28

<표 3> 태묘·제릉·경령전의 왕실 奏告 행위 비교 ····· 29

<표 4> 경령전에서만 행했던 의례 행위 ····· 37

그 림 목 차

<그림 1> 개성 고려궁성 경령전의 위치 ····· 8

<그림 2> 경령전 5室 체재 평면도 ····· 20

<그림 3> 인종 2년 태묘와 경령전의 祔廟·奉安 양상 ····· 30

<그림 4> 충선왕 2년 태묘와 경령전의 祔廟·奉安 양상 ····· 30

머리말

고려 왕조의 조상을 대상으로 의례가 행해지던 공간으로는 神主가 모셔진 太廟,[1] 梓宮을 모셔놓은 陵, 그리고 神御[2]가 모셔진 景靈殿, 眞殿 등이 있다. 이 중 경령전은 국왕의 四親이 모셔진 공간으로, 태묘가 있음에도 '어떤 필요에 따라' 거듭 지어진 原廟였다.[3] 원묘는 이중의 廟인만큼 다른 시기의 경우 때때로 존재 이유가 부정되곤 했다.[4] 반면 경령전은 현종대 창건 이후 왕조가 사라지기 전까지 존속하고 기능했다. 이처럼 경령전은 원묘임에도 四親을 모시고, 나라와 왕실의 주요 행사를 고한 시설이었던 만큼 다양한 방면으로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령전 창건은 대부분 현종의 왕권 강화와 연관 지어 이해됐다. 경령전 창건이 현종의 아버지인 安宗과 연관되어있는 만큼, 현종이 경령전 창건을 통해 정통성과 권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보았다.[5]

경령전의 중요성은 고려의 종교 전통과 관련하여 해석되기도 한다. 먼저 불교적 성격을 지닌 공간이라고 보는 연구는 모셔진 매개물이 신어라는 점에 주목했다. 신어는 불교에서 발전한 조상숭배 형태로, 사찰에 신어를 모셔놓은 것과 같이 경령전 역시 불교적 공간이라고 본 것이다.[6]

---

1) 종묘는 태묘로도 칭해졌다. 태묘는 태조의 廟 혹은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묘를 뜻한다(한형주, 2016 《종묘와 궁묘》, 민속원, 46쪽). 본고에서는 《고려사》 예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고려의 경우 태묘로 서술할 것이다.

2)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초상화를 표현하는 단어로는 神御, 睟容, 眞, 眞容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神御로 통용할 것이다.

3) 《漢書》 卷22, 禮樂志2 "至孝專時, 以沛公爲原廟. 師古曰 "原, 重也." 言已立正廟, 更重立也."

4) 《欽定四庫全書》《龜山集》卷12, 宋 楊時 "叔孫通作原廟, 是不使人主改過, 而敎之恥過作非也, 此爲萬世之害. 今太廟卻閒了, 只嚴奉景靈宮, 是舍先王之禮, 而從一謬妄之叔孫通也. 豈不過乎."

5) 김철웅, 2009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32, 108쪽; 한정수, 2012 〈고려시대 태조 追慕儀의 양상과 崇拜〉 《사학연구》 107, 19쪽; 홍영의, 2012 〈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 37쪽; 윤기엽, 2013 〈고려 경령전(景靈殿)의 건립과 동향〉 《한국사상과문화》 69, 147쪽; 유희경, 2016 〈고려 현종대 경령전 설치와 그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37쪽; 김아네스, 2019 《고려의 국가제사와 왕실의례》, 경인문화사, 231쪽; 최봉준, 2020 〈고려 현종-정종대 왕실의 眞影 중심 조상 숭배 의례의 확립과 그 의미〉 《규장각》 56, 20쪽.

도교적 성격에 주목한 연구의 경우 모티브가 되었다고 여겨지는 宋의 景靈宮이 道觀이었다는 점과, 충렬왕대 경령전에서 사용할 籩豆를 淨事色에서 빌려오게 한 점을 주목했다.[7] 한편 신어를 봉안하면서도 五廟制에 따라 先王을 모셨다는 점에서 儒·佛적 성격이 혼합된 공간으로 보거나,[8] 비록 신어가 모셔져 있더라도 불교 행사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만큼 종교적 성격을 규정할 수 없다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9]

경령전의 위치 및 구조에 관한 연구는 2007년부터 이루어진 고려 궁성 발굴조사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령전은 2007년 1차 시굴 조사에서 건물의 비정이 이루어졌는데, 5개의 예단 기초시설이 서북건축군 '다' 17호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10]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2~3차 조사에서는 경령전을 비롯한 서쪽 지역 공간의 활용 양상을 규명하였고,[11] 이러한 발굴 성과를 토대로 문헌 자료와 비교를 통해 17호 건물지의 경령전 비정을 확실시하기도 했다.[12] 현재는 경령전을 중심으로 문헌과 비교하여 서부건축군의 다른 전각들을 추정하고 있다.[13]

이처럼 경령전은 왕권과 종교적 측면에서 상당 부분 그 의미가 밝혀졌으나, 태묘가 기능하고 중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혹은 왜 경령전이 고려말까지 중요한 공간으로 존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개경 환도 이후 本闕 일대 대부분이 복구되지 않았으나, 경령전은 여전히 의례 공간으로써 활용되었음이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로

---

6) 허흥식, 1986 〈佛敎와 融合된 王室의 祖上崇拜〉 《高麗佛敎史硏究》, 일조각, 59-62쪽; 김철웅, 2005 〈고려시대 太廟와 原廟의 운영〉 《국사관논총》 106, 24쪽; 윤기엽, 2013 〈고려 혼전(魂殿)의 설치와 기능〉 《한국사상사학》 45, 125쪽; 유희경, 2016 앞의 논문, 36-37쪽.

7) 한기문, 2008 〈高麗時代 開京 奉恩寺의 創建과 太祖眞殿〉 《한국사학보》 33, 231쪽.

8) 윤기엽, 2013 앞의 논문, 139쪽.

9) 홍영의, 2012 앞의 논문, 88쪽.

1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고려개성궁성 시굴조사보고서》

11)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발굴조사보고서》 3

12) 김철웅, 2009 앞의 논문, 108-112쪽; 장동익, 2009 〈고려시대의 경령전(景靈殿)〉 《역사교육논집》 43권, 492-493쪽; 홍영의, 2012 앞의 논문, 78-79쪽.

13) 박성진, 2012 〈고려궁성 서부건축군의 건물지군 배치관계 검토〉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발굴조사보고서》2, 국립문화재연구소; 남창근, 김태영, 2011 〈고려 본궐 경령전 일곽의 성격과 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13; 남창근, 2020 〈고려 본궐 만월대 주요전각 위치와 배치체계〉 《중앙고고연구》32.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경령전이 태묘와는 별개의 상징성을 지닌 공간으로 여겨지고 활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적 관점을 통해 경령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한 시도 역시 경령전의 의의를 밝히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고 있듯이, 경령전이 어떤 종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는지 규정짓기는 어렵다. 연구자가 경령전이라는 공간의 특성 중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경령전과 유사한 공간이었던 文昭殿[14]과의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유교를 중시하여 태묘만 중요시되던 조선과는 달리, 불교 중시 혹은 다원적 사상지형을 지닌 고려에서는 경령전이 중시되었다고 본 것이다.[15] 경령전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奏告 행위 역시 고려의 사상지형 아래 경령전의 위상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문소전에 신어가 아닌 위패가 모셔지게 된 과정과,[16] 문소전의 전신이 魂殿[17]이었다는 점을 보면 문소전의 위상과 상징성을 토대로 경령전을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당대 경령전이 태묘와 대립한 종교적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서 의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당연시되는 믿음[왕권 강화, 직계가 모셔진 공간의 중요성, 종교적 사상지형 등]에 편승하여 경령전의 중요성을 밝히는 것이

---

14) 조선 세종대에 만들어진 원묘로, 왕마다 각각의 원묘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흩어진 혼전들을 하나로 합쳐 신설한 공간이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경복궁 북쪽에 있었다(《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2월 신해; 권55 세종 14년 1월 병인).

15) 지두환, 1994 《朝鮮前期 儀禮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06쪽; 김철웅, 2005 앞의 논문, 24쪽.

16) 문소전에 위패가 모셔진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확립한 조선에서 신어의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최봉준, 2020 앞의 논문, 5쪽). 그러나 문소전에 위패가 모셔진 주된 이유는 모셔지는 인물의 실제와 신어의 표현이 다를 경우, 이는 다른 사람을 모시는 것과 같다는 점이었다(《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1월 무인; 권64, 세종 16년 4월 임술). 따라서 종교적인 이유로 문소전에 신어가 아닌 위패가 모셔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령전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신어가 모셔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초상화는 경령전이 창건될 당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된 조상숭배 매개물이었다(허홍식, 1986 앞의 책, 59-60쪽; 김상범, 2016 앞의 논문, 18쪽).

17) 《國朝五禮儀》에서는 문소전이 俗禮로 분류되어 있지만, 《세종실록》 五禮에서는 凶禮로 분류되어 있다(《세종실록》 권135, 五禮 凶禮儀式 祔文昭殿儀). 이는 문소전이 혼전의 後身이었기 때문이다.

아닌, 창건 당시의 상황과 이로부터 비롯된 공간의 상징성 그리고 이후의 의례화 및 제도화 과정에 주목하여 경령전이 어떻게 고려 말까지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존속할 수 있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례를 행했기 때문에 경령전이 중요하게 여겨졌다'가 아닌, '어떤 맥락'에서 경령전을 통해 정통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는지, '왜' 경령전에서 특정 의례를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여겼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一장에서는 창건 당시의 상황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현종대 경령전이라는 공간은 경령궁과 무관하게 현종의 考妣인 安宗과 孝肅王后를 위한 시설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二장에서는 안종과 효숙왕후를 위해 만들어졌던 시설이 어떤 맥락에서 四代考妣를 모시는 공간으로 형태가 변모하고, 국가 단위 의례가 행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왕들의 즉위 親告를 주목하여 어떻게 경령전이 고려 전시기에 걸쳐 존속하고 기능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三장에서는 덕종이 경령전에서 즉위를 고한 이후 어떠한 의례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어떻게 정비되고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태묘와 경령전의 다른 점에 더욱 주목하여 경령전에서 행해진 의례 행위들을 검토할 것이다.

분석 사료로는 먼저 《高麗史》와 《高麗史節要》를 참고하여 경령전과 관련된 기록, 그리고 왕실과 관련된 의례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령전에 관한 사료가 소략한 탓에 연대기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東人之文四六》, ≪靈鷲山大慈恩玄化寺之碑銘≫ 등의 문집과 금석문을 참고하였으며, 다른 시기와 다른 왕조의 원묘와 의례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朝鮮王朝實錄》, 《宋史》, 《漢書》 등을 참고하였다.

一. 顯宗初 安宗과 孝肅王后의 魂殿 건립

경령전의 창건 목적과 시기, 의의 등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는 사료는 현전하지 않는다. 경령전의 구체적인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종대에 창건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덕종은 현종의 태자로 덕종 즉위년(1031) 5월 25일 왕위에 오르고, 한 달 뒤인 6월 24일 경령전에 나아가 왕위에 올랐음을 고하는데 이것이 경령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첫 기록이다.[18] 이를 토대로 경령전이 적어도 현종대에는 완공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 11년(992) 태묘가 완공된 이후 先王先后가 태묘에 모셔진 상태에서 현종이 경령전을 창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경령전 창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현종이 돌아가신 부모님인 안종과 효숙왕후를 태묘에 祔廟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지적한다.[19] 한편, 경령전 창건에 宋의 景靈宮이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공간 모두 原廟라는 특징을 지녔으며, 건립 시기와 명칭의 유사성, 그리고 神御를 奉安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송의 경령궁은 경령전 창건에 영향을 주었으며, 창건 취지 역시 경령궁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20] 그러나 경령전이 경령궁의 영향을 받아 창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大中祥符 5년(고려 현종 3년, 1012)에 창건하기 시작하여 대중상부 9년(고려 현종 7년, 1016)에 완성된 송의 경령궁은 眞宗대 聖祖인 趙玄郞[軒轅皇帝]이 강림한 곳을 궁으로 봉하기 위해 세워졌다.[21] 景德 2년(고려 목종 8년, 1005) 1월 遼와 '澶淵의 和約'을 체결한 진종은 비난을 회피하

---

18)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 22년 5월 신미; 덕종 즉위년 6월 경자 "庚子 謁景靈殿, 告卽位."

19) 김철웅, 2009 앞의 논문, 106-107쪽; 윤기엽, 2013 앞의 논문, 146-147쪽; 유희경, 2016 앞의 논문, 19쪽, 31쪽; 김아네스, 2019 앞의 책, 231쪽.

20) 허흥식, 1986 앞의 책, 61쪽; 김철웅, 2008 앞의 논문, 104-105쪽; 한정수, 2012 앞의 논문, 19쪽; 홍영의, 2012 앞의 논문, 80쪽; 윤기엽, 2013 앞의 논문, 142-148쪽; 유희경, 2016 앞의 논문, 20-31쪽.

21) 《宋史》 卷109, 志62 禮12 景靈宮 "景靈宮創於大中祥符五年, 聖祖臨降, 爲宮以奉之."

고 자신의 통치를 扮飾하기 위해 일부 상청파 도사들과 함께 태평성세를 상징하는 天書 강림 사건을 날조하였다. 강림한 천서는 玉淸昭應宮에 봉안되었고, 헌원황제 역시 옥청소응궁에 함께 모셔지게 된다. 경령궁은 이후 옥청소응궁에 모셔져 있던 헌원황제를 별도로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이러한 후속 조치는 唐에서는 玄元皇帝[노자]가 독립적인 공간인 太淸宮에 모셔졌던 사실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22]

이러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경령궁에는 창건 당시 신격화된 始祖 조현랑의 玉石像과 聖祖母의 像만 모셔져 있을 뿐 추존 4祖와 태조 그리고 태종은 봉안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天聖 원년(고려 현종 14년, 1023)에는 仁宗의 아버지인 진종의 신어, 明道 2년(고려 덕종 2년, 1033)에는 어머니인 章懿皇后의 신어가 봉안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왕의 神御殿이 만들어지던 경향성에 의한 것이었다.

北宋은 건국과 직접 관련되거나, 황제가 親征하여 그 戰功을 顯彰할 수 있는 장소에 신어전을 건립하였다. 또한, 황제가 탄생한 곳이나 즉위전에 머물렀던 潛邸에도 신어전을 건립하였는데, 경령궁이 창건된 자리는 태종의 잠저이자 진종이 탄생한 곳이었다.[23] 즉 진종이 경령궁에 모셔진 것은 경령궁의 위치가 진종의 탄생지였기 때문이지, 경령궁이 국왕의 考妣를 모시기 위한 공간으로 변화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경령궁의 창건 목적이 국왕의 혈연적 考妣를 모시기 위함이 아니었던 만큼 이후 경령궁에는 태묘와 같은 역대 선왕선후들이 봉안되었다.[24]

한편 경령궁이 경령전과 같이 여러 선제선후가 모셔진 공간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은 경령전보다 늦은 元豊 5년(고려 문종 36년, 1082)부터이다. 神宗은 2년에 걸쳐 경령궁 내에 11개의 전각을 건립하고, 京師 寺觀 곳곳에 분산되었던 선제선후의 어용을 경령궁으로 집결시켰다. 이는

---

22) 김상범, 2016 〈北宋時期 景靈宮과 國家儀禮〉 《동양사학연구》136, 11쪽, 14쪽.

23) 《續資治通鑑長編》 卷79, 大中祥符 5년 12월 갑인; 김상범, 2016 앞의 논문, 15-22쪽.

24) 《宋史》 卷109, 志62 禮12 景靈宮; 山內弘一, 1985 〈北宋時代の神御殿と景靈宮〉 《東方學》 70, 50쪽. 경령궁이 혈연적 조상을 모시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음은 이후 寧宗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영종은 治平 원년(고려 문종 18년, 1064) 先帝인 仁宗을 봉안하는데, 영종의 親父는 趙允讓으로 인종의 사촌 형제다(《宋史》 卷245, 列傳4 宗室2 濮王傳).

신어들이 흩어져 있어 황제의 親祀가 원활하지 못하고, 의례 역시 통일적으로 엄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25]

경령전과 경령궁의 건립 목적이 相異하였음은 각 시설이 만들어진 위치가 달랐던 점에서 역시 찾아볼 수 있다. 경령궁은 도성의 중축선에 해당하는 南面御街[26]에 창건되었다. 이곳은 태종이 開封府尹을 역임할 때 사용하던 官邸이자 진종의 탄생지였다. 더불어 해당 위치는 分野術로도 天上의 종묘에 해당하는 곳으로 성조를 모시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이로써 경령궁은 天上의 옥황대제와 성조 헌원황제 그리고 진종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상징적인 위치에 창건되었다.

또한, 경령궁이 창건된 남면어가 북단은 상징적인 여부를 떠나 위치상으로도 중앙관서가 집중된 핵심 통치 구역이자 宮廷廣場의 성격을 갖는 공간이었다. 이는 곧 개방된 공간에서 황제에 의한 의례가 행해졌음을 뜻한다. 이처럼 황제는 개방된 공간에 있는 경령궁에서 의례를 행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위엄과 권력을 대대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27]

---

25) 《宋史》卷109, 志62 禮12 吉禮12 景靈宮; 山內弘一, 1985 앞의 논문, 50쪽; 김상범, 2016 앞의 논문, 27-28쪽; 송에서 신어전이 문제가 된 이유는 漢의 郡國廟 철폐에 제기됐던 이유와 유사하다. 군국묘에 대한 문제 제기는 元帝 대에 이루어진다. 원제는 혈연관계가 멀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漢 왕실의 종묘(태묘) 제사를 받드는 것은 예제상 부합하지 않으며, 황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재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군국묘를 없앴다(김용천, 2007 앞의 책, 208쪽).

26) 남면어가는 황제가 出行하던 4개의 어가 중 하나로, 궁성의 남문인 宣德門에서 출발하여 변하의 州橋를 건너 內城의 남문인 朱雀門을 지나 南郊의 원구단에 이르는 노선으로, 4개의 어가 중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김상범, 2015 〈北宋 都城 開封의 儀禮空間과 都市景觀〉 《이화사학연구》 51, 120-121쪽).

27) 田銀生, 2011 《走向開放的城市-宋代東京街市研究》,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79-80쪽; 김상범, 2015 앞의 논문, 124-125쪽, 134쪽; 김상범, 2016 앞의 논문, 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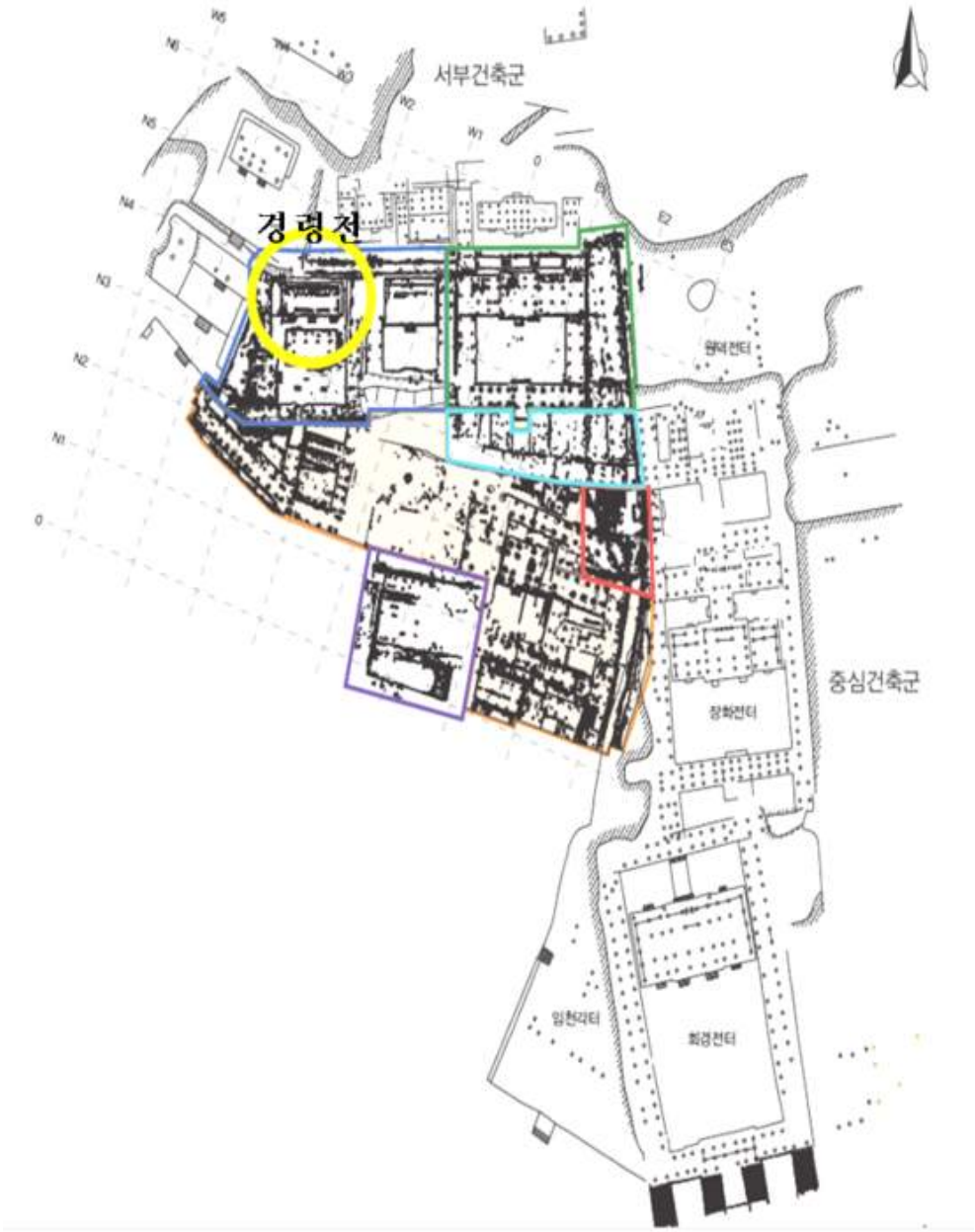

<그림 1> 개성 고려궁성 경령전의 위치[28)]

28) <그림 1>의 발굴조사 현황도는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3, 30쪽의 개성 고려궁성 발굴조사 현황도를 기반으로 하였다.

반면 경령전은 <그림 1>에서 확인되듯이 大內 깊숙한 곳에 건립되었다.[29] 만약 현종이 송의 경령궁과 유사하게 왕권의 과시 혹은 건재함을 주된 목적으로 경령전을 창건한 것이었다면 궐 안이 아닌 궐 밖에 위치시켜 다수의 사람이 경령전과 경령전에서 행해지는 의례를 볼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이처럼 경령궁의 건립 기원, 모셔진 양상을 보았을 때 경령전이 경령궁의 영향을 받아 창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두 시설 모두 원묘라는 점에서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원묘의 특성상 서로 다른 상징성과 의의를 지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원묘는 태묘가 있음에도 '당시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 이중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당대의 필요성은 나라와 시기별로 차이가 있기에 기원과 상징성 그리고 쓰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령전이 건립되었을 '당대의 상황'을 분석하여 경령전이 창건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려 건국 이후 태조의 윗세대를 제외하고 국왕의 考妣로서 왕과 왕비로 추존된 인물은 戴宗과 宣義王后, 그리고 안종과 효숙왕후 뿐이다. 성종은 즉위 후 자신의 아버지인 王旭에게 睿聖宣慶大王이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묘는 泰陵으로 고쳐 불렀고, 태묘를 세운 이후에는 신주를 태묘에 부묘하였다. 어머니 劉氏에게 역시 宣義라는 시호를 올리고, 신주는 대종과 함께 태묘에 모셨다.[30] 또한, 사찰에서 대종과 선의왕후의 제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찰에서는 이들의 신어를 모시고 忌晨齋를 지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31]

---

29) 《고려사》 권126, 열전39 간신 염흥방; 권127, 열전40 반역 이자겸; 이상준, 2009 앞의 도록; 문소전 창건 목적을 토대로 경령전의 궐내 창건 이유를 추정하기도 한다(김철웅, 2008 앞의 논문, 104쪽). 문소전은 철의 음식물로 즉시 제사 지내고[享薦], 제사의 편리성을 위해 궐내에 창건되었다고 한다(《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2월 신해; 12월 을묘). 그러나 경령전과는 다른 이유로 후대에 세워진 문소전을 토대로 경령전의 궐내 창건 이유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고려사》에는 헌정왕후가 사가에서 薨했다는 서술(《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 헌정왕후 황보씨)과 달리 《玄化寺之碑銘》에는 大內 寶華宮으로 장소가 바뀌어 기록되어 있다. 《玄化寺之碑銘》이 안종과 효숙왕후의 侍奉과 관련된 기록인 만큼 경령전의 궐내 창건은 이와 연관되어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30)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태조 왕자 대종 왕욱; 권92, 열전4 공주 태조 소생 공주 선의왕후.

31)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8년 12월 병인.

성종의 사례를 보았을 때 즉위 이후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侍奉은 총 세 방면[공간]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먼저 ①신주를 일정 공간에 안치하였으며, ②능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③사찰에서 신어[眞影]를 모시고 기신재를 행했다. 이는 성종대 태묘 건립 이후 고려의 역대 모든 선왕선후에게 적용되는 행위였다.

성종의 시봉 사례와 이후의 양상을 보았을 때 현종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셨으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현종은 즉위 두 달 뒤 아버지인 王郁을 孝穆大王으로 어머니인 獻貞王后 皇甫氏를 孝肅王太后로 추존했다.[32] 그러나 즉위 직후 시작된 거란과의 전쟁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과 관련된 시설이 정비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지는 못했다. 개경 내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관련된 공간이 정비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확인되는 것은 현종 8년(1017) 이후부터다.

가장 먼저 재정비된 공간은 능으로 현종 8년(1017) 현종은 아버지인 안종의 묘를 泗州에서 개경으로 모셔오고, 乾陵이라 改稱하였다. 그리고 현종 9년(1018)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진영을 모시고 그들에 대한 기신재와 祈願이 행해질 玄化寺를 창건하기 시작했다.[33] 현종은 성종의 사례와 같이 안종과 효숙왕후에게 시호를 올리고, 능을 재정비하였으며, 기신재를 행할 사찰을 창건하였다. 이제 현종에게 남은 과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신주에 대한 정비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신주를 태묘에 모실 수 없었다는 점이다.

효와 정통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종 역시 성종과 마찬가지로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를 태묘에 부묘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현종은 이들의 신주를 태묘에 모시지 못했는데,[34] 이에 대해서는 안종의 도덕적 문제[35]와 位次 및 世次의 문제[36]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기왕의

---

32)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즉위년 4월 갑오; 권88, 열전1 후비 헌정왕후황보씨; 권90, 열전3 종실 안종 왕욱.

33)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8년 4월 미상; 현종 9년 6월 무신; 《靈鷲山大慈恩玄化寺之碑銘》

34) 덕종 즉위 당시에도 안종과 효숙왕후는 태묘에 부묘되어 있지 않다(《고려사》 권61, 지15 예3 길례대사 제릉, 덕종 즉위년 6월 계사).

35) 최순권, 1998 〈高麗前期 五廟制의 運營〉 《역사교육》 66, 45쪽; 윤기엽, 2013 앞의 논문, 145-146쪽.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안종의 부묘로 인해 위차와 세차가 어그러지는 상황이 안종과 효숙왕후가 태묘에 부묘되지 못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광종과 같은 반열인 대종의 경우 광종의 아들인 경종이 부묘된 이후 태묘에 부묘되었으나,[37] 별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위차와 세차의 문제보다는 도덕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종과 함께 부묘될 현종의 어머니 孝肅王后의 이전 시호[38]가 獻貞王后였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獻貞王后라는 시호는 곧 그녀가 경종[獻和]의 비였음을 의미한다. 보통 선왕의 묘호와 시호는 선왕이 태묘에 부묘될 시점에 결정되는데,[39] 왕후의 시호 역시 이때 정해진 夫王의 시호에 맞춰 내려지거나 혹은 변경된다.[40] 따라서 경종[獻和]의 妃로서 獻貞王后라는 시호를 받은 皇甫氏의 신주를 안종과 함께, 경종의 윗실로 모신다는 것은 당시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태묘에 신주를 부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왕 고비의 신주를 여타 왕실 인물의 신주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에 현종은 태묘 대신 신주를 모실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경령전이다. 즉, 경령전은 경령궁과는 무관하게 태묘에

---

36) 안종은 태조의 아들로 태묘에 부묘될 경우 같은 반열인 혜종, 광종, 대종과 함께 모셔져야 했다. 그러나 현종 윗대의 국왕인 경종, 성종, 목종이 태묘에 모셔져 있는 상태에서 이들을 뛰어넘어 부묘를 한다면 위차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김철웅, 2008 앞의 논문, 106-107쪽; 윤기엽, 2013 앞의 논문, 146쪽).

37) 경종이 태묘에 부묘된 것은 성종 12년 3월이고, 대종이 부묘된 것은 성종 13년이다(《고려사》 권61, 지15 예3 제릉, 성종 12년 3월 미상; 성종 3년 4월 미상).

38) 왕비에게 부여된 존호는 태묘 부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謚號로 기록되어 있다.

39) 김호, 2005 〈조선 왕실의 '廟號' 개정을 통해 본 기억의 역사〉 《인간연구》 8, 191쪽.

40) 漢代 이래로 황후의 시호는 從夫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당시 황후의 시호 첫 글자는 관례대로 황제의 시호를 따랐다(이정란, 2021 〈고려 전기 국왕 謚號制의 그 내용과 의미〉 《한국사학보》 82, 71쪽). 이는 고려에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령 예종비이자 인종의 모후인 文敬太后 李氏는 夫王인 예종보다 먼저 훙하였는데 이때 주어진 시호는 順德王后였다. 그러나 예종이 훙한 후 文孝라는 시호를 받게 되자 이에 맞추어 文敬太后로 추존된다. 문경태후의 예 외에도 태조[神聖]의 적처는 神을, 혜종[義恭]의 적처는 義를, 定宗[文明]의 적처는 文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원종대까지 확인된다(《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

부묘될 수 없던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일종의 '魂殿'[41]으로 창건된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령전에 선왕과 함께 先后 역시 모셔져 있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존재하며, 선왕선후가 신어의 형태로 모셔져 있었다는 점이 통설인 만큼 두 주장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안종과 효숙왕후의 시봉과 관련된 기록인 《靈鷲山大慈恩玄化寺之碑銘》(이하 《玄化寺之碑銘》)과 현종 18년(1027)의 加諡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현종 12년(1021) 8월 현종은 현화사의 碑額을 친히 적고, 翰林學士 周佇에게는 碑文을, 叅知政事 蔡忠順에게는 碑陰을 짓게 했다. 해당 碑文에는 현종이 '즉위 이후 추존의 예를 행하였고, 부묘의 의례를 갖추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42] 이를 통해 현종 12년(1021) 8월 이전에는 안종과 효숙왕후가 경령전에 부묘된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비문의 서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안종과 효숙왕후가 경령전에 모셔졌을 때 사용된 한자가 '祔'라는 점이다. '祔'에는 先祖의 신위가 있는 사당에 合祀한다는 의미와 함께, 상례를 마친 뒤 사당에 신위를 모신다는 의미가 포괄되어 있다.[43] 고려에서 역시 '祔'라는 표현은 神位, 즉 신주가 모셔질 때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다.

眞影이 모셔질 때의 표현을 살펴보면 이러한 비교가 더욱 두드러진다. 현화사에는 여타 선왕선후의 사찰과 마찬가지로 안종과 효숙왕후의 진영이 모셔졌다. 앞서 '祔廟之儀'와 달리 '진영을 모셨다'에 활용된 표현은 '安'이었다.[44] 즉, 비문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각각의 시설에 모셔놓은 상황을 서술할 때 '祔廟'와 '安'으로 표현을 달리 한 것은 각기 모셔진 매개물이 달랐음을 뜻한다. 따라서 태묘 외에 신주를 모실 공간이 필요했

---

41) 혼전은 선왕선후의 장례 기간 중 설치되어 상을 마치면 바로 철폐되는 시설이지만, 본고에서는 '선영의 혼을 봉안하는 집'이라는 넓은 의미로 초기 경령전을 혼전이라고 개념하였다(윤기엽, 2013 〈고려 혼전의 설치와 기능〉 《한국사상사학》 45, 126쪽 참고). 한편, 조선에서는 선후의 喪 이후 남아 있던 혼전을 神殿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42) 《玄化寺之碑銘》 "龍飛之後, 念劬勞之恩, 每積風樹之歎, 以爲追尊之禮行矣, **祔廟之儀**備矣."(밑줄은 필자 강조)

43) 이현진, 2011 〈조선시대 종묘의 부묘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43호, 62쪽.

44) 《玄化寺之碑銘》 "別立殿一座, 俾**安考妣眞影**."(밑줄은 필자 강조)

던 당시의 정황과, 《玄化寺之碑銘》에 작성된 표현의 차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현종대 창건된 경령전에는 안종과 효숙왕후가 신주 형태로 모셔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주와 신어(또는 진영)가 모셔질 때 나타나는 표현의 차이는 《고려사》에서 역시 확인된다. 고려에서 선왕과 선후를 특정 공간에 모시면서 '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태묘만이 유일하다.[45] 물론 태묘에 모셔질 때 '祔' 외에 다른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權安', '復安', '還安', '復入', '奉安' 등의 표현이 사용된 사례가 찾아지는데, 이는 대체로 임시로 신주를 안치한 경우, 전쟁으로 인해 태묘가 기능하지 못하다가 다시 신주를 모셨을 경우, 遞遷되었던 선왕이 다시 모셔졌을 때만 사용되었다.[46] 따라서 보통의 상황에서 선왕선후의 신주가 태묘에 모셔질 때 사용된 표현은 '祔'였다.

신어의 경우 신주가 모셔질 때 사용된 '祔' 대신 '奉安', '移安', '奉遷', '奉迎' 등 '奉과 安'으로 표현되고 있다.[47] 이는 경령전에 선왕선후의 신

---

45) 《고려사》 권61, 지15 예3 길례대사 제릉 성종 13년 4월 미상 "**祔**太祖, 惠·定·光·戴·景宗于**廟**"; 권3, 세가3 목종 원년 4월 임자 "**祔**成宗于**太廟**."; 권4, 세가4 현종 5년 4월 병자 "穆宗**祔**"[齋坊]; 권5, 세가5 덕종 2년 8월 무오 "**祔**顯宗于**太廟**."; 권6, 세가6 정종 2년 12월 신유 "**祔**德宗于**太廟**."; 권7, 세가7 문종 2년 8월 병자 "**附**靖宗于**太廟**."; 권10, 세가10 선종 2년 10월 계유 "**祔**文宗于**太廟**."; 권10, 세가10 선종 2년 11월 정유 "**祔**順宗于**太廟**."; 권11, 세가11 숙종 원년 6월 신유 "**祔**宣宗于**太廟**. (중략) 景成王后金氏主 (중략) **祔德宗室**"; 권12, 세가12 예종 3년 4월 기해 "肅宗**祔廟**"; 권15, 세가15 인종 2년 4월 갑술 "**祔**睿宗于**太廟**."; 권20, 세가20 명종 16년 1월 병오 "**祔**恭睿太后于**太廟**."; 권21, 세가21 희종 2년 2월 기미 "**祔**神宗于**太廟**."; 권22, 세가22 고종 2년 9월 정묘 "**附**康宗于**太廟**.";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 7월 을미 "**祔**元宗于**太廟**."; 권37, 세가37 충숙왕 2년 5월 을유 "**祔**大行王(충혜왕)于**太廟**"; 권37, 세가37 충숙왕 3년 2월 임오 "**祔**忠穆王于**太廟**."; 권45, 세가45 공양왕 2년 4월 임술 "**祔**德寧公主·魯國大長公主于**太廟**."; 권64, 지18 예6 흉례 신우 원년 4월 기유 "**祔(충정왕)**于**太廟.**"; 권54, 지8 오행2 목 신우 원년 11월 신사 "**祔**敬孝大王(공민왕)于**大廟.**" (밑줄은 필자 강조)

46)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3년 12월 정축 敎曰, "昔在晋朝, 太室燒毁, 杜預·謝鯤等, 奏修嘉德門, **權安**神主, 以行祭禮."; 권5, 세가5 현종 18년 2월 무자 "二月 戊子 修太廟, **復安**神主."; 권13, 세가13 예종 9년 10월 병오 "奉惠宗神主, **復入**于大廟第二室"; 권24, 세가24 고종 42년 11월 정유 "太廟成, **還安**神主."; 권26, 세가26 원종 11년 미상 "**權安**世祖·太祖梓宮, 及奉恩寺太祖塑像·九廟木主."; 권27, 세가27 원종 13년 3월 병술 "太廟成, **奉安**九室主."; 권40, 세가40 공민왕 12년 5월 정해 "**還安**九室神主于太廟" (밑줄은 필자 강조)

47) 《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 8년 7월 계사 "**奉安**明懿太后眞于開國寺肅宗**眞殿**."; 권14, 세가14 예종 11년 3월 기해 "**奉安**肅宗及明懿太后**睟容**于天壽寺."; 권19, 세가19 명종 5년 5월 임인 "**安**其眞(의종)於海安寺."; 권20, 세가20 명종 10년 8월 병신 "**移安**太

어를 모실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령전에 선왕이 모셔진 가장 처음의 기록은 선종대로, 선종은 아버지인 문종을 경령전에 모시는데, 이때 사용된 표현은 '奉安'이었다. 이후 경령전에 선왕선후가 모셔질 때의 표현 역시 모두 '奉安'이다.[48]

이처럼 신주를 모실 때의 표현인 '祔'와 초상화를 모실 때의 표현인 '奉'과 '安'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던 것을 보면, 안종과 효숙왕후를 부묘했다는 표현은 주목할만하다. 이는 안종과 효숙왕후가 신주의 형태로 경령전에 모셔져 있었음을 의미하며, 창건 당시의 경령전은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를 모신 '혼전'으로서 기능했음을 뜻한다.

창건 당시 경령전이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가 모셔진 일종의 '혼전'으로 기능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대한 근거는 현종 18년(1027)에 행해진 加謚에서 역시 확인된다. 현종은 즉위 후 자신의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총 세 차례 시호를 올렸다. 아버지에게는 즉위 직후 孝穆大王이라는 시호를 올렸고, 8년(1017) 5월에는 憲景을, 18년(1027)에는 聖德을 더하였다. 어머니에게 역시 아버지와 동일하게 즉위 직후 孝肅王后라는 시호를, 8년(1017) 5월에는 惠順을, 그리고 18년(1027)에는 宣容을 더하였다.[49]

고려에서 嗣王은 즉위 이후 친부 혹은 친모, 그리고 조모에게도 추존했는데, 가령 현종의 祖母이자 태조의 비인 神成王太后 金氏의 시호는 현종이 즉위 이후 추증한 시호였다.[50] 현종 즉위 이후 올려진 효목대왕

祖·靖宗神御于大安寺."; 명종 14년 11월 정미 "**奉安**太后眞于靈通寺仁宗眞殿."'; 명종 26년 2월 임신 "**奉**宣孝寺毅宗神御, **移安**于佛住寺."; 권22, 세가22 고종 4년 3월 기축 "**奉遷**玄化寺安·顯·康三宗神御于崇敎寺."; 고종 4년 8월 병오 "八月 丙午朔 **奉遷**崇敎寺康宗神御于王輪寺"; 권26, 세가26 원종 11년 5월 을축 "(전략)**奉迎**太祖眞于江華." (밑줄은 필자 강조)

48)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2년 8월 정축 "**奉安**文宗神御于**景靈殿**, 親行奠禮."; 권15, 세가15 인종 2년 4월 임신 "**奉安**睿宗晬容于**景靈殿**"; 권17, 세가17 의종 2년 3월 갑자 "甲子 **奉安**仁宗神御于**景靈殿**."; 권22, 세가22 고종 2년 8월 기유 "**奉安**康宗神御于**景靈殿**"; 권25, 세가25 원종 2년 7월 신유 "**安**高宗眞于**景靈殿**"; 권33, 세가33 충선왕 2년 11월 임인 "**奉安**忠烈王眞于**景靈殿**"; 권37, 세가37 충목왕 2년 4월 기유 "**奉安**大行王眞于**景靈殿**." (밑줄은 필자 강조); 한편, 충렬왕 2년 원종이 경령전에 모셔졌을 때 '祔'라는 표현이 사용된다(《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 6월 병술 "**祔**元宗眞于**景靈殿**"). 그러나 '祔'가 사용되는 용례[신주]와 '奉安'의 용례[초상화]를 살펴보았을 때 충렬왕 2년의 기사는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49)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 경종 후비 헌정왕후 황보씨; 권90, 열전3 종실 태조 왕자 안종 왕욱.

과 효숙왕후라는 시호는 같은 맥락에서 추증된 시호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즉위 직후에 행해진 追諡 외에 태묘에 모셔져 있지 않은 혹은 모셔져 있던 적이 없는 선왕선후에게 시호가 더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려 전 시기에 걸쳐 태묘와 別廟에 모셔져 있던 선왕선후에게 시호가 더해진 사례는 열두 번 정도로 확인된다.[51] 첫 번째 사례는 목종 5년(1002)으로 태묘에서 제사를 지낸 이후 시호를 더하였고, 이때 시호가 더해진 대상은 태묘에 부묘되어 있던 선왕선후 뿐이었다. 이후 현종 5년(1014)에는 신주를 임시로 안치한 齋坊에서 禘祭를 행한 이후 시호가 더해졌는데, 이때의 대상 역시 재방에 모셔져 있던 선왕선후 뿐이었다.[52]

목종 5년(1002), 현종 5년(1014)과 같은 가시는 고려 전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태묘 제사가 시호를 더하여주는 주된 계기였던 만큼, 그 대상은 태묘 및 별묘[인종 18년(1140) 이후]에 모셔져 있던 인물들이었다.[53] 가령 문종 10년(1056) 혜종과 의화왕후 임씨에게는 시호가 더해지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혜종이 태묘에서 遞遷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체천된 선왕선후에게도 시호가 더해진 것은 인종 18년(1140) 이후부터다.[54] 이처럼 시호가 더해지는 경향성을 보았을 때 현종 18년(1027)에 시호가 더해진 양상은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현종 18년(1027) 현종은 거란군에 의해 불탄 태묘를 수리하고 재방에 모셔져 있던 선왕선후의 신주를 다시 태묘로 모셨다. 그로부터 두 달 뒤 태묘에서 체제를 지내고, 목종 5년(1002), 현종 5년(1014)과 마찬가지로

---

50)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 태조 후비 신성왕태후 김씨.

51) 본고에서 살펴본 목종 5년, 현종 5년, 현종 18년 외에 문종 10년, 선종 3년, 인종 18년, 고종 2년, 고종 40년, 충렬왕 13년, 충숙왕 12년, 공민왕 원년, 공민왕 20년에 시호가 더해진 사실이 확인된다(《고려사》 권7, 세가7 문종 10년 10월 임술; 권10, 세가10 선종 3년 4월 경술; 권17, 세가17 인종 18년 4월 정묘; 권22, 세가22 고종 2년 10월 을미; 권24, 세가24 고종 40년 6월 신해; 고종 40년 10월 무신; 권30, 세가30 충렬왕 13년 7월 경술; 권35, 세가35 충숙왕 12년 6월 기묘; 권38, 세가 38 공민왕 원년 2월 병자; 권43, 세가43 공민왕 20년 12월 기해).

52) 《고려사》 권3, 세가3 목종 5년 4월 임신; 권4, 세가4 현종 5년 3월 27일 임자; 4월 21일 병자.

53) 이정란, 2021 앞의 논문, 86쪽.

54) 인종 18년 이후부터는 태묘에서 체천되어 별묘에 모셔진 선왕선후에게도 시호가 더해지는데, 가령 인종 18년에는 12陵에, 고종 40년에는 19릉에 시호가 더해진다(《고려사》 권17, 세가17 인종 18년 4월 정묘; 권24, 세가24 고종 40년 10월 무신).

태묘에 모셔진 선왕선후에게 시호를 더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전과 달리 태묘에 모셔져 있지 않은 인물인 안종과 효숙왕후 그리고 元貞王后 金氏와 元惠太后 金氏에게 추가로 시호가 더해졌다는 점이다.[55]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우선 시호가 더해졌을 당시 원정왕후와 원혜태후가 모셔져 있었을 공간을 추정해볼 수 있다. 태묘에는 선왕 옆에 비가 모셔지기 마련이다. 이때 국왕보다 먼저 薨한 왕비는 국왕이 태묘에 부묘될 때 함께 부묘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선왕과 함께 태묘에 부묘되기 이전 왕비의 신주는 혼전에 모셔져 있게 된다.[56] 이는 고려에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고려의 독특한 점은 그다음 왕위계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태묘에 부묘될 왕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태묘에 선왕과 함께 부묘될 왕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의 경우 선왕의 옆에 누가 모셔질지는 비교적 명확했는데, 廢妃가 되지 않는 이상 선왕의 모든 왕비는 그 수를 막론하고 모두 종묘에 부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의 왕비 부묘는 조선과 같이 단순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부인이 곧 나의 어머니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태묘에 선왕과 함께 부묘될 수 있던 선후는 오직 한 명으로, 그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57] 우선 왕이 無嗣이거나 아들이 있더라도 왕위를 승계하지 못한 경우 대체로 첫 번째 왕후가 함께 부묘되었다. 혜종과 함께 부묘된 의화왕후 임씨가 그 예이다.

한편 父子承繼가 이루어졌을 때는 왕위계승자의 친어머니가 선왕의 비

---

55)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 18년 2월 무자; 4월 12일 임오; 권88, 열전1 후비 경종 후비 헌정왕후 황보씨 “十八年四月, 加宣容.”; 후비 현종 후비 원정왕후 김씨 “十八年, 加懿惠.”; 후비 현종 후비 원혜태후 김씨 “十八年五月, 加謚平敬王后.”; 권90, 열전3 종실 태조 왕자 안종 왕욱 “十八年, 加聖德.”

56) 이현진, 2007 〈조선 왕실의 혼전〉 《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148-149쪽.

57) 원 간섭기의 경우 두 범주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충선왕의 후비였던 懿妃는 충숙왕의 모후였음에도 왕후로 추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충선왕과 함께 태묘에 부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기록이 없어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아마 계국대장공주가 충선왕과 함께 부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숙왕과 함께 부묘된 복국장공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복국장공주는 後嗣가 없음에도 충숙왕과 함께 부묘되었다(《東文選》 권29, 〈忠肅王室加上尊謚冊文〉). 이는 원 간섭기에는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왕비가 부묘되었음을 의미한다.

로서 태묘에 함께 부묘됐다.[58] 가령 현종과 함께 부묘된 元城太后 金氏는 덕종과 정종의 母后였다. 물론 현왕의 모후라도 이미 선왕 옆에 왕비가 부묘된 경우 자신의 모후를 태묘에 모시지는 못하였다.[59]

이처럼 嗣王이 왕위를 승계하기 전까지는 태묘에 부묘될 왕비가 누구일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승계가 이루어졌더라도 모후가 태묘에 부묘된다는 보장은 없었다. 모후의 大祥 기간이 지나 태묘에 부묘될 시기까지는 재위를 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선왕의 옆에 왕후가 부묘되기 전까지는 태묘에 올라갈 수 있는 적처들[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별도의 공간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60] 즉, 현종 18년(1027) 시호가 더해진 시점에 원정왕후와 원혜태후는 魂殿에 모셔져 있었을 것이다.

기존의 시호가 더해진 양상과 비교해보았을 때 현종 18년(1027) 원정왕후와 원혜태후에게 시호가 더해진 것은 매우 독특한 일이었다. 또한, 이는 혼전에 모셔져 있던 인물에게 시호가 더해진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혼전에 모셔져 있던 원정왕후와 원혜태후에게까지 시호가 더해진 것일까. 이는 현종이 태묘 대신 일종의 '혼전'인 경령전에 모셔져 있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태묘에 모셔진 선왕선후와 마찬가지로 시호를 더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현종 18년(1027) 경령전에 모셔져 있던 안종과 효숙왕후와 함께 실제 혼전에 안치되어 있던 원정왕후와 원혜태후에게도 시호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령전을 경령궁과 무관하게,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를 모시기 위한 '혼전'으로 창건된 공간이라고 보았을 때 경령전의 세부적인 창건 연대 역시 조정될 수 있다. 경령전 창건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현종 11~12년(1020~1021) 설과 현종 18년(1027) 이후 설이 있다. 《玄化寺之碑

58) 물론 헌애왕후와 같은 예외 역시 존재한다. 헌애왕후가 김치양과 私通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경종과 함께 태묘에 부묘되었을 왕비는 獻肅王后가 아닌 목종의 모후인 헌애왕후였을 것이다. 헌애왕후는 사통으로 인해 목종의 모후였음에도 태묘에 부묘되지 못하였고, 대신 경종의 첫 번째 부인인 헌숙왕후가 경종과 함께 태묘에 부묘된다.

59) 문종의 모후인 元惠太后 金氏가 해당된다. 문종이 즉위했을 때는 이미 현종과 함께 덕종과 정종의 모후인 元城太后 金氏가 태묘에 부묘되어 있었다.

60) 해당 시설로 추정되는 곳은 이후 后妃別廟로 칭해지는 곳이다. 다만 후비별묘와 관련하여서는 '후비의 별묘에는 공신을 배향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유일하여 구체적인 운영 양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려사》 권61, 지15 예3 길례대사 별묘).

銘》의 '부묘지의'라는 표현에 따르면 안종과 효숙왕후는 비액이 작성된 현종 12년(1021) 8월 이전 특정 공간에 '부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전자는 이를 경령전으로, 후자는 이를 재방으로 해석하여 경령전의 창건 시점을 추정하고 있다.

먼저 현종 11~12년(1020~1021) 설의 경우 궁궐 중수 시기와 송 경령궁의 창건 시기(고려 현종 3~7년, 1012~1016)를 토대로 한 추정이다. 거란과의 전쟁 이후 현종 2~5년(1011~1014), 현종 11~14(1020~1023)년 총 두 차례에 걸쳐 궁궐 중수가 이루어진다. 경령궁이 경령전 창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경령전의 창건 시기는 경령궁 창건 이후인 두 번째 궁궐 중수 시기로 좁혀진다. 즉 현종 11년(1020)부터 현종 12년(1021) 사이[현화사비]에 경령전이 창건되었다고 보는 것이다.[61]

현종 18년(1027) 이후 설의 경우 태묘 중건 시기를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태묘가 중건된 현종 18년(1027) 이전에 조상을 모시는 여타 시설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 해당 주장에서는 '부묘지의'가 행해진 공간을 경령전이 아닌 임시로 태묘의 구실을 하던 재방으로 보고 있다.[62] 그러나 현종 5년(1014) 재방에서 체제를 지내고, 이때 이르러 목종을 부묘했다는 기사[63]를 보면, 비록 재방이 임시적인 공간이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태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묘지의'의 공간은 재방이 아닌 경령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선왕선후에 대한 시봉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경령전은 안종과 효숙왕후에 대한 시봉이 행해지기 시작하는 현종 8년(1017)에 여타의 공간 정비와 함께 건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안종의 능은 현종 8년(1017)에 재정비되었고, 현화사 창건은 현종 9년(1018)부터 행해진다. 진영을 모실 현화사의 창건이 현종 9년(1018)부터 행해진 만큼, 신주를 태묘에 모시지 못해 만들어진 경령전이 현화사 창건보다 3년 혹은 그 이후가 지난 시점에 기획되고 건립되었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

61) 김철웅, 2009 앞의 논문, 103-105쪽.
62) 윤기엽, 2013 앞의 논문, 143-147쪽.
63)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5년 4월 병자.

또한, 현종 8년(1017) 안종과 효숙왕후에게 더해진 시호 역시 경령전이 현종 8년(1017)에 창건되었음을 암시한다. 앞서 살펴본 현종 18년(1027) 외에 현종 8년(1017)에도 안종과 효숙왕후에게 시호가 더해지는데, 이는 안종의 능을 개경으로 옮긴 그다음 달의 일이다.[64] 현종 전후 시기 태묘에 부묘되어 있던 선왕선후에게만 시호가 더해지던 양상과 비교해보았을 때, 현종 8년(1017) 안종과 효숙왕후에게 더해진 시호는 이들이 경령전에 부묘되면서 더해진 시호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현종 8년(1017)에 더해진 시호가 능에 모셔진 신주에 대한 것이었다면 현종 5년(1014)에도 재방에 모셔져 있던 선왕선후와 함께 안종과 효숙왕후에게도 시호가 더해졌어야 한다. 이는 곧 현종 8년(1017)에 이르러 이전과 다른 追尊의 예가 행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즉 현종 8년(1017)에 더해진 시호는 경령전 창건 직후 부묘된 안종과 효숙왕후에게 행해진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해보자면 국왕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시봉 양상,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가 태묘에는 모셔질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 《玄化寺之碑銘》의 '부묘지의'라는 표현과 《고려사》의 '祔' 용례를 살펴보았을 때, 현종 8년(1017) 경령전 창건 당시 안종과 효숙왕후는 신어가 아닌 신주의 형태로 모셔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묘지의'의 대상에 안종만이 아닌 효숙왕후 역시 해당한다는 점과 현종 18년(1027)에 안종과 효숙왕후 모두에게 시호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경령전은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건립되고 기능한 시설이었다고 볼 수 있다.

64)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8년 4월 미상; 현종 8년 5월 을축; 권88, 열전1 후비 경종 후비 헌정왕후 황보씨; 권90, 열전3 종실 태조 왕자 안종 왕욱.

二. 顯宗末 四親之殿으로의 개편

一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종 초기의 경령전은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를 모시기 위한 일종의 '혼전'으로 창건되었다. 그러나 《고려사》 예지의 경령전 의례에 따르면 경령전은 5室로 구획되어 있으며, 세가에서는 四親之殿으로 표현되어 있다.[65] 또한, 근래의 발굴 작업을 통해 서부건축군 17호 건물지의 건물 내부에서 <그림 2>와 같이 5개의 예단 기초시설이 확인되었다. 현재 17호 건물지가 경령전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며, 이로써 고고학적으로도 경령전이 5실로 구획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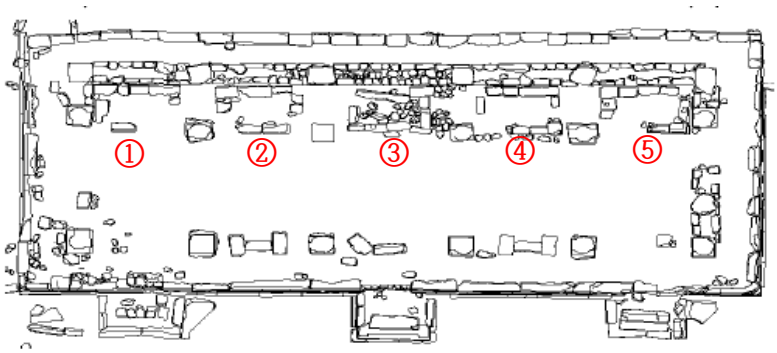

<그림 2> 경령전 5室 체재 평면도[66]

5실로 구성된 경령전에는 不遷位인 태조[67]를 비롯한 현 국왕의 四代考妣가 모셔져 있었다. 물론 경령전에 奉安·移安된 신어의 기록은 대다수 남아 있지 않으며, 무신집권기에는 봉안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기록이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종대 강종을 경령

65) 《고려사》 권61, 지15 예3 경령전; 권22, 세가22 고종 2년 8월 기유 "(전략) 雖享國日淺, 能傳聖嗣, 遺弓之後, 入安四親之殿, 眞天命也."

66) <그림 2>는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개성 고려궁성》, 15쪽의 경령전터 발굴평면도를 토대로 하였다.

67) 《고려사》 예지 경령전조에서 의례 과정을 설명하며 태조실 이후의 실을 2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 태조 외의 불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려사》 권61, 지15 예3 길례대사 경령전). 또한, 존재하는 봉안과 이안 기록을 비교해보았을 때, 태조 이외의 불천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에 모시면서 언급한 사친지전이라는 표현, 원종대 인종과 명종의 초상화를 순서에 맞게 배열하라는 지시,[68] 충렬왕이 충선왕을 폐위시키고 瑞興侯 王琠을 後嗣로 삼고자 할 때 親子가 아닌 왕전이 후사가 될 경우 왕전의 四親에 해당하지 않는 고종과 원종은 경령전에서 이안될 거라는 최유엄의 주장 등[69]을 보면, 고려 전 시기에 걸쳐 경령전은 태조를 비롯한 현 국왕의 사친이 모셔지는 곳이라는 인식이 명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령전의 창건 기원에 따라 모셔지는 범주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태묘는 功德에 따른 부묘와 체천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경령전은 현왕의 사대고비라는 명확한 범주가 존재했기 때문에 비록 사친이 모셔져 있지 못한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 원리가 흔들렸던 것은 아니다.

힌편 이러한 사친지전의 운영 원리에 따라 滿室이 되면, 代數가 넘어간 신어는 사찰[진전]로 옮겨졌다.[70] 그러나 이러한 양상을 두고 경령전이 불교적 성격을 지닌 공간이었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 당시 신어를 모시는 신어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신어를 모시고 小祥齋, 大祥齋 이후 忌晨齋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사찰이었다. 따라서 당시 경령전에서 이안된 신어가 모셔질 장소로는 사찰이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경령전의 5실 체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태조와 현왕의 사친을 모시는 형태로 경령전이 창건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와,[71] 송의 경령궁과 유사하게 국왕의 1代祖 정도만을 모셨다가 어느 순간 형태가 변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72]

1장에서 다뤘듯이 창건 당시의 경령전은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를 모시기 위한 시설이었던 만큼, 창건 당시부터 태조와 사친이 모셔진 형태

68)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 6년 4월 계묘.
69) 《고려사》 권110, 열전23 제신 최유엄; 《고려사절요》 권23, 충렬왕5 충렬왕 32년 9월 미상.
70)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 2년 7월 신유;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 6월 병술; 권33, 세가33 충선왕 2년 11월 임인.
71) 김철웅, 2008 앞의 논문, 105-108쪽.
72) 윤기엽, 2013 앞의 논문, 147쪽.

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태묘 대신 齋坊을 임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상숭배시설이 건립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73]처럼 창건 당시부터 태묘와 유사한 공간으로 경령전이 설계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경령전은 언제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태조와 현 국왕의 사친이 모셔진 공간으로 형태가 변화한 것일까.

국왕의 경령전 봉안 기록이 나타난다는 것은 경령전이 더는 안종과 효숙왕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태조의 경령전 봉안 기사는 현전하지 않으므로, 경령전이 태조와 사대고비의 신어를 모시는 시설로 변화된 정확한 시기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경령전에 처음 봉안 기록이 찾아지는 것은 선종대이다.[74]

봉안 기록에 앞서 경령전이 의례의 공간으로 처음 활용된 사례는 덕종 즉위 한 달 이후 경령전에서 행해진 즉위 親告이다.[75] 덕종이 경령전에서 즉위를 고했다는 것은 경령전의 형태가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즉위를 조상에게 奏告하는 행위는 자신에게 내려진 天命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이다. 경령전이 비록 선왕인 현종의 근원[안종과 효숙왕후]을 보여주는 공간이지만, 결국 돌아가신 부모님의 근원은 태조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76] 따라서 덕종이 즉위를 친히 고했을 당시 경령전에는 안종과 효숙왕후와 함께 태조 역시 봉안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덕종의 즉위 친고로 보았을 때 경령전의 성격이 '혼전'에서 사친지전으로 변화된 시기는 현종 18년(1027) 4월 이후부터 늦어도 덕종 즉위년(1031) 6월 사이로 추정된다. 덕종 즉위년을 하한선으로 잡은 이유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경령전에서 덕종이 친히 즉위를 고했기 때문이다. 한편 상한선으로 현종 18년(1027)을 주목한 이유는 경령전에 모셔져 있던 안종과 효숙왕후에게 마지막으로 시호가 더해진 시점이기 때문이다.

---

73) 김철웅, 2008 앞의 논문, 105쪽; 윤기엽, 2013 앞의 논문, 144쪽.
74)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2년 8월 정축.
75) 《고려사》 권5, 세가5 덕종 즉위년 6월 경자.
76) 이라한 사실은 《玄化寺之碑銘》의 표현에서도 찾아진다. "皇考安宗孝懿大王, **太祖親子, 仁邦本枝** (하략)."라 하여 安宗이 태조의 子孫임이 강조되고 있다(밑줄은 필자 강조).

비록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경령전은 예종 2년(1107) 숙종의 大祥齋를 전후로 하여 숙종이 봉안되면서 만실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곧 대수가 넘어가는 대상의 이안이 행해질 것을 의미한다. 안종과 효숙왕후에 대한 이안 기록 역시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들의 신어는 예종이 경령전에 봉안된 인종 2년(1124)에 진전사찰로 옮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경령전에서 이안되기 이전인 문종 10년(1056)과 선종 3년(1086), 태묘에 모셔져 있던 선왕선후를 대상으로 시호를 더할 때[77] 안종과 효숙왕후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이례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현종 18년(1027)에는 태묘에 모셔져 있던 선왕선후와 더불어 경령전에 모셔져 있던 안종과 효숙왕후에게 시호가 더해졌던 것과 달리, 문종 10년(1056)과 선종 3년(1086)에는 현종 18년(1027)과 같이 이들에게 시호가 더해지지 않는다. 이는 곧 경령전이 적어도 현종 18년(1027)까지는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를 모시는 '혼전'으로 기능하였으나, 현종 18년(1027) 이후에는 공간의 형태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경령전의 성격이 변화되기 이전 누대로 고려 왕조의 조상에 대한 국왕 친행 의례가 행해지던 공간은 태묘가 유일했다. 태조가 모셔진 봉은사[효사관]에서 대대로 국왕이 친히 태조의 諱辰道場을 지낸 것은 덕종 원년(1032) 덕종이 봉은사에서 태조의 휘신도량을 지낸 이후의 일이었다.[78] 또한, 선왕선후의 기신재 역시 代를 넘어서 국왕의 親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국왕이 친히 진전에 나아가 酌獻을 행한 존재는 父王과 母后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종은 자신이 훙한 이후 경령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덕종이 즉위를 하게 되면 안종과 효숙왕후는 덕종에게 祖父 세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령전은 常禮에 해당하는 공간은 아니었다. 경령전은 태묘에 들어가지 '못'한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아들인 현종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전은 본디 영구적인 공간은 아니었으며, 안종과 효숙왕후는 현종의 考妣로서 혼전의 역할을 하

77) 《고려사》 권7, 세가7 문종 10년 10월 임술; 권10, 세가10 선종 3년 4월 경술.
78) 《고려사》 권5, 세가5 덕종 원년 6월 신축.

는 특수한 공간[경령전]에 모셔져 있는 상태였다.

현종은 '혼전'의 성격을 지니고, 非禮에 가까운 공간인 창건 당시의 경령전은 대대로 존속하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경령전이 지속해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형태와 성격의 변화가 필요했다. 즉, 현종은 자신이 훙한 이후에도 안종과 효숙왕후에 대한 추존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79] 또한, 경령전의 궁극적인 창건 목적은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를 모시기 위함이었으나, 창건 이후의 경령전은 필연적으로 현종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역할 역시 수행하였다. 태조와 현왕의 사대고비를 모시는 형식으로의 개편은 경령전이 현종의 정통성만이 아닌 이후 현종계 왕실이 태조와 안종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가시화해주는 공간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즉, 현종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안종과 효숙왕후에 대한 추존을 지속함과 동시에 현종계 왕실의 정통성을 지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경령전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경령전의 봉안 범주가 불천위인 태조와 함께 국왕의 혈연상 사대고비였던 이유는 안종과 효숙왕후의 봉안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범주였기 때문이다. 한편 모셔진 매개물에서 역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신주의 형태로 모셔져 있던 안종과 효숙왕후가 신어의 형태로 모셔지게 된 것이다. 덕종 즉위 이후 개정된 祝文을 보면 안종과 효숙왕후의 축문이 개정된 곳은 陵으로,[80] 당시 이들의 신주는 경령전이 아닌 능에 안치되어 있었다. 이는 태묘에 신주로 모셔져 있는 태조를 경령전에 이중의 신주로 모실 수 없던 만큼 태조가 신어의 형태로 모셔질 때, 안종과 효숙왕후 역시 이에 맞춰 신어의 형태로 모셔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 이후 봉안된 선왕선후 역시 신어의 형태로 경령전에 모셔지게 된다.

현종말 경령전은 안종과 효숙왕후의 '혼전'에서 현왕의 혈연적 사대고비가 모셔지는 곳으로 '형식'이 변화하였고, 그러한 형식의 변화에 따라

79) 뒤르켕이 강조하듯이, 사실상 '감정은 상징에 의해서만 연장'될 수 있다(랜들콜린스, 진수미 역, 2009 《사회적 삶의 에너지-상호작용 의례의 사슬-》, 한울아카데미, 74쪽).

80) 《고려사》 권61, 지15 예3 길례대사 제릉 덕종 즉위년 6월 계사.

이전과 다른 '기능'이 추가로 부여됐다. 《고려사》 예지에는 경령전 주고에 대한 규정이 찾아지는데, 嘉禮 중 冊王妃儀, 元子誕生賀儀, 冊王太子儀, 王太子稱名立府儀, 王太子加元服儀에 대한 주고, 軍禮에서는 出鉞還鉞에 대한 주고가 경령전에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81] 규정된 사례 외에도 즉위, 국내 騷擾,[82] 능 수리,[83] 탈상,[84] 客使辭退宴,[85] 經行,[86] 환국,[87] 등을 고하는 장소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경령전에서 행해진 다양한 주고를 토대로 경령전이 태묘보다 숭배의 정도가 더 강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88]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의례 행위의 실행을 근거로 경령전의 중요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경령전에서 행해진 의례들에 대한 나열만이 아닌 고려 왕조의 조상들이 모셔져 있는 여타 시설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현종대 경령전 창건 이후 고려 왕조의 조상들이 모셔져 있는 시설로는 태묘(및 별묘), 경령전, 諸陵, 진전사찰이 존재했다. 이 중 진전사찰의 경우 태묘나 경령전과 같이 태조를 비롯한 다수의 선왕을 대상으로 한 의례는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전사찰의 주된 기능은 기신재로, 이는 《고려사》 예지 흉례조 〈先王諱辰眞殿酌獻儀〉를 통해서 확인된다.[89] 이처럼 진전사찰은 공간의 기능이 비교적 명확했다.[90] 따라서 경령전과 비교되어야 할 공간은 태조를 비롯한 다수의 조상이 모셔진 태묘와 제릉이다.

---

81) 《고려사》 권64, 지18 예6 군례 遣將出征儀; 권65, 지19 예7 가례 冊王妃儀; 元子誕生賀儀; 권66, 지20 예8 가례 冊王太子儀; 王太子稱名立府儀; 王太子加元服儀.

82) 《고려사》 권16, 세가16 인종 14년 4월 경자; 권19, 세가19 명종 7년 7월 정미.

83) 《동국이상국집》 권40, 〈簡陵修理次大廟景靈殿告事由祝〉, 〈憲陵修理同前祭祝〉 〈壽陵修理次同前祭祝〉, 〈景陵修理次大廟及景靈殿告事祝〉.

84)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6년 1월 신축.

85) 《동국이상국집》 권40, 〈客使辭退宴景靈殿告事祝〉.

86) 《동국이상국집》 권40, 〈經行日景靈殿告事祝〉.

87)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 원년 3월 정해.

88) 김철웅, 2008 앞의 논문, 119-121쪽; 한정수, 2012 앞의 논문, 20쪽; 한편 이러한 해석은 불교를 중시 혹은 다원적 사상지형을 가지고 있던 고려에서는 경령전과 같은 王統이 아닌 四親이 중시되는 비유교적인 형태의 공간이 태묘보다 중시될 수 있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지두환, 1994 앞의 책, 106쪽; 김철웅, 2005 앞의 논문, 24쪽).

89) 《고려사》 권64, 지18 예6 흉례 先王諱辰眞殿酌獻儀.

90) 한기문, 1998 앞의 논문, 245-246쪽.

태묘(종묘)는 周代로부터 범국가적인 행사 및 王公의 제례인 禘 의례를 이행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군주가 이행하는 각종 종교·정치·외교에 해당하는 의례 대부분이 행해졌다. 한편 漢代 이후로는 군주의 청정장소가 아닌 제례시설로만 여겨졌으나, 治朝와 관련한 다양한 주고는 여전히 행해졌다.[91]

고려에서도 제사 외에 다양한 주고 행위가 태묘에서 행해졌다.[92] 태묘에서는 예지에 규정되어 있는 책왕비의, 책왕태자의, 왕태자칭명입부의, 왕태자가원복의, 王太子納妃儀와 배릉의, 遣將出征[93] 외에도 다양한 주고 행위가 행해졌다. 국가의 다양한 치조 행위로는 전쟁의 성과와 歸附,[94] 연호 사용,[95] 황제 이름의 避諱,[96] 事大[97], 즉위,[98] 왕태후 책봉,[99] 동전 사용,[100] 남경 창건[101], 국내 소요 평정,[102] 관제 개정,[103] 능 수리[104] 등의 일이 태묘에 고해졌다. 또한, 주고 외에 다양한 기원 행위 역시 빈번

---

91) 김용천, 2006 〈前漢 元帝期 韋玄成의 宗廟制論〉 《동양사학연구》 95보, 6쪽; 서정화, 2017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 한국학술정보, 56-70쪽; 서정화, 2018 〈『춘추』 경문에서의 묘(廟)·궁(宮) 언급을 통한 주대(周代)의 그 쓰임 사례 일고찰 - 주대의 묘수제(廟數制) 실재 여부에 대한 궁구 과정에서【1-2】〉 《한국철학논집》 57, 65쪽; 서정화, 2018 〈『左傳』에서의 廟・宮 언급을 통한 周代의 그 쓰임 사례 一考察 - 周代의 廟數制 실재 여부에 대한 궁구 과정에서(2-2)〉 《유교사상문화연구》 72, 152-158쪽.

92) 태묘에서 행해지던 제사는 寒食, 臘日, 祫祭, 禘祭, 告朔 의식 등이 있다(《고려사》 권60, 지14 예3 길례대사 태묘).

93) 《고려사》 권65, 지19 예7 가례 冊王妃儀; 권66, 지20 예8 가례 冊王太子儀; 王太子稱名立府儀; 王太子加元服儀; 王太子納妃儀; 권61, 지15 예3 길례대사 拜陵儀; 권64, 지18 예6 군례 遣將出征儀.

94) 《고려사》 권9, 세가9 문종 27년 2월 병자; 문종 35년 4월 병자.

95)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2년 2월 계유; 권17, 세가17 인종 20년 7월 신축.

96)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 6년 3월 기묘.

97) 《고려사》 권15, 세가15 인종 4년 3월 을미.

98) 《고려사》 권15, 세가15 인종 즉위년 4월 정유 "丁酉 王詣景靈殿, 告卽位, 遣使告于大廟·九陵."

99) 《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 3년 2월 신묘.

100)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 6년 4월 병진; 권77, 지33 식화2 화폐 숙종 7년 12월 미상.

101)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 6년 10월 병신.

102)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8년 10월 기유.

103)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원년 11월 계유.

104) 《동국이상국집》 권40, 〈簡陵修理次大廟景靈殿告事由祝〉, 〈憲陵修理同前祭祝〉 〈壽陵修理次同前祭祝〉, 〈景陵修理次大廟及景靈殿告事祝〉.

히 이루어졌다. 날씨의 쾌청과 전쟁의 승리 및 극복을 기원하기도 하였으며,[105] 천도를 점친 공간 역시 태묘였다.[106] 이처럼 고려에서도 태묘는 군주가 이행했거나 기원하는 행위 또는 그에 대한 주고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태묘에 이어 살펴볼 공간은 능이다. 《고려사》 예지 중 능에서 이루어져야 할 행위로 규정된 것은 책왕태자의뿐이다.[107] 그 외에 능은 體魄이 모셔진 공간인 만큼 태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함께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이다. 가령 태묘에 즉위, 연호 사용, 황제 이름에 대한 피휘 사실을 고할 때 능에서도 역시 동일한 주고가 행해졌으며, 祈雨, 祈晴, 전쟁에서 승리를 祈福하는 기원 행위들 역시 동일하게 행해졌다.

<표 1> 고려 왕실 조상숭배 시설별 의례 행위

행위 \ 공간	태묘	제릉	경령전
祈雨·祈晴·祈雪	○	○	
祈福[전쟁, 국왕 안위]	○	○	
점[전쟁·事大·천도]	○		
奏告	○		○

※표의 음영은 태묘와 경령전에서 행해진 중복된 행위를 나타냄.

※주고의 세부적인 분류는 <표 2>에 제시됨.

앞서 살펴본 태묘, 제릉, 경령전에서 행해졌던 의례 행위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의 의례 행위가 여러 공간에서 중복되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능의 경우 태묘에는 혼을, 능에는 백을 모셔놓은 것이기 때문에 태묘와 중복되는 의례가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존재에 문제가 될 일은 없었다.

반면 경령전의 경우 태묘와 유사하게 다수의 조상이 모셔져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우·기복·점과 같은 기원 행위는 행해지지 않았으며

105)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4년 1월 기사; 권13, 세가13 예종 4년 5월 갑인; 권24, 세가24 고종 41년 10월 무자; 권39, 세가39 공민왕 8년 5월 병오.
106)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9년 1월 병진.
107) 《고려사》 권66, 지20 예8 가례 冊王太子儀.

주고의 장소로만 활용되었다. 이는 태묘의 경우 선왕선후의 부묘 기준이 공덕이었던 것에 반해, 경령전은 공덕과는 별개로 혈연을 토대로 모셔진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內殿 가까이, 다수의 조상이 모셔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원 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경령전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경령전에서 행해지던 주된 의례 행위인 주고의 경우 어떠할까. 태묘와 제릉 그리고 경령전에서 행해졌던 주고를 세분화하여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태묘·제릉·경령전의 奏告 행위 비교[108]

행위 \ 공간	태묘	제릉	경령전
즉위	○	○	○ [親告]
왕실	○	○	○
遣將出征	○		○ [斧鉞 出納 親告]
歸附	○		
전쟁	○[국내+국외]		○[국내]
연호개정	○	○	
避諱	○	○	
동전주조	○	○	
남경건설	○		
관제개혁	○		
經行			(○)
객사사퇴연			(○)
還國			(○)

※표의 음영은 태묘와 경령전에서 행해진 중복된 행위를 나타냄.

※왕실의 세부적인 분류는 <표 3>에 제시됨.

<표 2>와 같이 경령전에서 행해진 주고는 태묘에 비해 좁은 범위로 상당 부분 중복되어 행해졌다. 이 중 경령전과 태묘에서 함께 고해진 의례는 즉위, 견장출정, 그리고 왕실 관련 행위이다. 왕실 관련 주고의 경우 <표 3>과 같이 범주가 세분될 수 있다.

108) <표 2>에 경령전에서 행해진 의례 중 ( ) 표시된 행위는 예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들을 표시한 것이다.

<표 3> 태묘·제릉·경령전의 왕실 奏告 행위 비교[109]

행위 \ 공간	태묘	제릉	경령전
王太子納妃儀	○		(○)
冊王妃儀	○		○
元子誕生賀儀			○
王太子稱名立府儀	○		○ [親告]
冊王太子	○	○	○
王太子加元服儀	○		○
능 수리	(○)		(○)
脫喪			(○)

※표의 음영은 경령전이 강조되는 의례 행위를 나타냄.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왕실 주고 행위 역시 상당 부분 중복되어 태묘와 경령전에서 의례가 행해지고 있다. 현왕의 사친이 모셔진 공간으로서 태묘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던 만큼 대다수의 왕실 의례가 경령전에서 행해졌다는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태묘와 경령전에서 행해지는 왕실 주고 의례는 상당 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태묘와 경령전이 왕조의 조상이자 국왕의 조상이 모셔진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 왕조의 조상을 모시고 의례가 행해지던 공간과 비교해보았을 때 경령전에서 대다수의 왕실 주고 의례가 행해졌기 때문에 경령전이 중요했다는 해석으로는 경령전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다. 또한, 경령전에 봉안되었을 국왕의 사친을 추정해볼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행해지던 의례뿐만 아니라 보이는 양상에서 역시 태묘와 중복되는 혹은 태묘에 비해 축소된 모습을 띠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령전에는 현왕의 사대고비만 봉안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종 2년(1107)에 이르러서야 만실 상태가 된다. 이후 인종 2년(1124) 인종은 아버지인 예종을 경령전에 봉안하기 위해 2실에 있던 안종을 이안해야 했다. 이로써 인종 2년(1124) 추존왕이었던 안종이 이안된 이후 경령전은 <그림 3>과 같이 태묘에 비해 다만 봉안된 대상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109) <표 3>에 경령전에서 행해진 의례 중 ( ) 표시된 행위는 예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들을 표시한 것이다.

태묘	不遷	1穆	1昭			2穆			2昭
	태조	현종	덕종	정종	문종	순종	선종	숙종	예종
경령전 (추정)	1室	2室	3室	4室	5室				
	태조	현종	문종	숙종	예종				

※그림의 음영은 태묘와 경령전에 동일하게 모셔졌던 임금을 나타냄.

<그림 3> 인종 2년 태묘와 경령전의 祔廟·奉安 양상

고려에서는 안종 이후 추존된 국왕이 없었던 만큼, 경령전은 인종 2년(1124) 이후로 태묘의 축소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특히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충선왕 2년(1310)에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강화된다. 충선왕은 元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태묘의 廟數를 5廟로 줄이는데,[110] 이로써 夾室을 제외한 태묘와 경령전 각 실에 모셔진 선왕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태묘	不遷	西夾室		東夾室		1昭	1穆	2昭	2穆
	태조	혜종 현종		문종 명종		강종	고종	원종	충렬왕
경령전	1室	2室	3室	4室	5室				
	태조	강종	고종	원종	충렬왕				

※그림의 음영은 태묘와 경령전에 동일하게 모셔졌던 임금을 나타냄.

<그림 4> 충선왕 2년 태묘와 경령전의 祔廟·奉安 양상

고려 왕조의 조상을 대상으로 의례가 이루어지던 공간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경령전에서 이루어지던 의례 대부분은 태묘에서 역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안종이 이안된 인종 2년(1124) 이후 경령전은 태묘와 모셔져 있던 양상 역시 유사해진다. 그런데도 경령전은 고려 말, 본궐이 기능하지 못하는 와중에도 존속하고 있었다. 개경 환도 이후 궁궐은 康安殿을 중심으로 일부 복구되었으나, 모든 시설물이 이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되고,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다만 의례를 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행위의 중심에 있던 건물이 바로 경령전이다.[111]

110) 《고려사》 권61, 지15 예3 길례대사 제릉 충선왕 2년 9월 미상.
111) 이상준, 2009 〈고려궁성 '서편건축군' 가~다 건물지의 성격〉 《개성고려궁성》, 국립문화재연구소, 148쪽.

경령전이 고려 말까지 의례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은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령전 일대에서는 많은 기와 유물과 자기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기와 유물을 통해서는 건물의 중건 시기를, 자기 유물을 통해서는 건물의 활용 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다. 경령전 일대의 기와 유물은 중기에 집중되고 후기에 적은 경향을 보이며, 자기 유물은 후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경령전이 중기에 중건된 후, 추가적인 중건 없이 소규모의 보수 정도로 후기까지 유지되다가 후기에 건물이 소실되면서 유물이 폐기되었음을 의미한다.[112]

이처럼 개경 환도 이후 본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경령전이 왕조 내내 존속하고 기능했다는 것은 곧 경령전은 태묘와 다른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령전이 태묘와 다른 상징성을 지닐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령전의 기원에서 비롯된 상징성에 따라 덕종이 경령전에서 즉위를 친히 고하였고, 이후 즉위를 고하는 주된 장소로 인식되고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덕종 이후 경령전에서 즉위를 고했다는 기록은 인종대에 찾아진다. 인종은 경령전에서 친히 즉위를 고하였고, 태묘와 제릉에는 遣使를 통해 즉위를 알렸다.[113]

이후 원종,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공민왕이 경령전에서 즉위를 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114] 우왕과 창왕의 경우 즉위 주고와 관련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창왕 즉위 이후 윤소종이 국왕의 親祭를 건의하면서 즉위 역시 태묘에 친히 고하라는 것[115]을 보면 창왕 역시 즉위 주고는 경령전에서 친히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덕종 이후의 경향성과 창왕대 윤소종의 글을 보았을 때, 비록 덕종 이래 국왕의 즉위 주고 기록이 모두 남아 있지는 않지만, 경령전에는 국왕이 친히 즉위를 고

112) 김영재, 2022 〈개성 만월대 경령전 일곽의 복원 방향〉 《2022년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학술대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75쪽.

113) 《고려사》 권15, 세가15 인종 즉위년 4월 정유 “丁酉 王詣景靈殿, 告卽位, 遣使告于大廟·九陵.”

114)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 원년 3월 정해; 권28, 세가28 충렬왕 즉위년 8월 기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 8월 갑인; 권34, 세가34 충숙왕 즉위년 6월 갑신; 권38, 세가38 공민왕 즉위년 12월 임인.

115) 《고려사》 권120, 열전33 제신 윤소종 “今唯四時大享親押, 其餘則皆代押, 甚遠誠敬之義. 願遵祖宗舊制, 祝文·詞疏, 齋沐親押, 圓丘·社稷·宗廟·籍田大享, 必皆親祀. (중략) 願自今日, 致齋思誠, 格于太廟, 躬服袞冕, 以告卽位, 以申孝思.” 昌下都堂議.’

하고, 태묘와 제릉에는 有司를 통해 즉위를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주목되는 점은 환도 이후 국왕의 생활은 대부분 본궐이 아닌 수창궁과 같은 離宮에서 이루어졌지만, 경령전은 여전히 즉위 친고의 장소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가령 충렬왕은 本闕로 행차하여 강안전에서 조서를 받고 경령전을 拜謁하였으며, 충선왕 역시 강안전에서 관정도량을 열고 경령전에서 즉위를 고한 이후 수레를 타고 수령궁으로 돌아갔다.[116] 강화 천도 이전과 달리 국왕이 거주하는 공간에 경령전이 위치하지 않았음에도 친히 행차하여 즉위를 고한다는 것은 곧, 즉위 과정 중 경령전이라는 공간에서의 주고가 중요했음을 의미한다. 즉, 경령전은 덕종대 즉위를 친히 고한 이후 지속적으로 즉위를 고하는 장소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태묘와 다른 경령전의 의의와 상징성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국왕이 경령전에서 즉위를 친히 고한 것에 관해 기존 연구에서는 경령전의 형식 또는 고려의 종교적 전통에 집중하였다. 먼저 형식에 집중한 해석의 경우 경령전은 국왕의 四代親이 모셔진 공간으로, 경령전에서 즉위를 고함으로 선왕의 직계 혈통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왕위 계승의 정당성과 왕권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117]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大統의 계승을 보여주는 태묘보다 덕종 즉위 당시 태조와 안종만이 모셔져 있던 경령전이 왜 권위를 확보하는데 더 타당하다고 여겨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편, 고려의 종교적 전통 아래 해석된 고려의 즉위의례는 고려가 비교적 덜 유교적인 사회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고려는 私的 은혜를 넘어서 義理에 토대한 유교적 정치원리가 운영 원리로서 기능하지 못할 정도로 덜 유교적이었다고 보거나 혹은 불교식 제향이 더욱 중시되고 선호되었다고 본 것이다.[118]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즉위 주고가 태묘가

---

116)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즉위년 8월 기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 8월 갑인.

117) 김철웅, 2008 앞의 논문, 119-120쪽; 장동익, 2009 앞의 논문, 502쪽; 김철웅, 2015 〈고려시대 국왕의 즉위의례〉 《정신문화연구》 38, 13쪽; 장지연, 2016 〈고려 초 卽位儀禮와 喪禮를 통해 본 권위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7, 321쪽.

118) 이범직, 1984 〈고려시기의 오례〉 《역사교육》 35, 70쪽; 김지영 외 5명, 2013

아닌 경령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서술은 모두 형식 혹은 종교적 전통 아래에서 경령전이 중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즉위 주고가 경령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았을 때 경령전은 오히려 경령전의 기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해진 덕종의 즉위 주고와 이후 지속적으로 국왕에 의해 친히 행해진 즉위 주고로 인해 고려에서 태묘와 다른 상징성을 갖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119]

고려에서 즉위의례는 대체로 즉위 이후 즉위식[유조의 반포, 국새의 전달, 백관의 하례], 선조에 대한 告由의식, 즉위 조서 반포와 사면, 태후 상책 등으로 이루어졌다.[120] 일련의 의례 과정에서 조상에게 즉위를 고한 이유는 주고를 통해 嗣王이 시조와 조상에게 내려진 천명을 이어받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시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漢의 모든 새 황제는 시조로 가장 처음 천명을 받은 漢 高祖의 신령에 즉위를 알림으로써 승인을 얻었다.[121] 한편 後漢 이래로 혈연상의 조상이 아닌 이념상의 조상을 모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삼국시대에 들어 더욱 강화된다. 이에 始祖廟 배알 대신 郊外의 제단에서 郊祀를 몸소 시행했으나, 행위의 의미는 같았다.[122] 즉 시기마다 즉위를 고하는 공간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조상에게 혹은 특정 공간에 나아가 즉위를 고한 이유는 해당 의례 행위를 통해 천명이 자신에게 이어졌음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덕종은 왜 태묘가 아닌 경령전에서 즉위를 친히 고하고 이를 통해 천명이 자신에게 이어졌음을 보이고자 했을까. 그리고 경령전은 어떻게 즉위를 친히 고하는 공간으로 제도화되었을까. 의례는 본질적으로

《즉위식, 국왕의 탄생》, 돌베개, 100쪽.

119) 조너선 스미스에 따르면 의례는 "성스러움"의 표현이거나 반응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의례에 의해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성스러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sacrificium의 기본 의미이다(조너선 스미스, 방원일 역, 2009 《자리 잡기 -의례 내의 이론을 찾아서-》, 이학사, 214-215쪽).

120) 김아네스, 2019 〈1장 왕위 계승과 즉위의례〉 앞의 책, 경인문화사.

121) 하워드 J 웨슬러, 임대희 역, 2005 앞의 책, 211-212쪽; 佐川英治, 2015 〈中國中古の都城設計と天の祭祀〉 《中國古中世史硏究》 第35輯, 68쪽.

122) 佐川英治, 2015 앞의 논문, 79쪽; 82-83쪽.

가시화이다. 따라서 덕종이 경령전에서 즉위를 고한 행위를 분석해보면 해당 행위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현종 즉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종은 당시 가장 유력한 왕위계승자로 여겨지던 인물이었다. 천추태후가 김치양과의 사통으로 낳은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大良院君[현종]을 암살하고자 했던 사실은 그러한 상황을 방증한다.[123] 이러한 이유로 현종은 王業을 中興시킨 中始祖로 인식되고 있었다.[124] 즉, 현종은 끊어질 뻔한 천명을 잇고, 거란과의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중흥시킨 군주였다.

한편 현종에게 부여된 중시조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은 태조로부터 현종으로 이어지는 천명의 중간에 존재하는 현종의 아버지 즉, 안종이다. 현종이 경령전을 세운 궁극적인 이유는 태묘에 모시지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주를 모시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기원으로 만들어진 경령전은 안종과 효숙왕후의 '혼전'으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현종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보여주는 역할 역시 수행하였다.

경령전의 기원을 살펴보았을 때 덕종이 태조와 안종이 모셔진 공간에서 즉위를 친히 고한 것은 곧 안종을 거쳐 현종계에게 천명이 내려졌음을, 즉 현종계에 의한 왕위 계승이 시작되었음을 가시화한 행위였다.[125] 즉위의례는 왕권의 승계를 정당화하는 의례로서, 이를 통해 그 권위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126] 이처럼 덕종이 경령전에서 즉위를 고한 행위는 현종말 경령전이 태조와 사대고비가 모셔지는 시설로 변화한 이후 경령전에 가장 걸맞는 의례였다고 할 수 있겠다.

경령전의 이와 같은 상징성과 중요성은 덕종의 즉위 친고로 가시화되어 당대인들에게 더욱 각인될 수 있었다.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본궐에 있던 기존의 공간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령전 일대는

---

123) 《고려사》 권93, 열전6 제신 채충순.

124) 《고려사절요》 권3, 현종문원대왕 현종 22년 5월 신미; 권70, 지24 악1 아악 현종 제3실 "(전략) 中興王業, 啓佑後昆."

125) 고종에 의해 강종이 경령전에 모셔졌을 때 이를 天命이라고 칭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려사》 권22, 세가22 고종 2년 8월 기유).

126) 하워드 J 웨슬러, 2005 앞의 책, 45쪽, 186쪽; 장지연, 2016 앞의 논문, 295쪽.

즉위를 고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덕종이 경령전에서 친히 행한 즉위 주고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경령전이 왕업 중흥의 상징이자 천명의 承襲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다시금 당대인들에게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의례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면 그 효과만큼 사람들에게 의례로 인한 상징성이 내재화되기 때문이다.[127]

경령전의 이러한 상징성은 국왕이 친히 즉위를 고하는 행위가 거듭되어 행해질수록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비록 덕종 이후 인종대까지 국왕이 경령전에서 즉위를 고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나, 덕종과 같은 현종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정종과 문종 역시 덕종과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그 인식하에 경령전에서 즉위를 고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령전에서 즉위를 고하는 것은 결국 태조에게 내려진 천명의 승습 양상을 보여주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또한, 개경 환도 이후에는 왕조의 본궐에 남아 있는 왕업의 중흥이자 천명의 승습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더욱 중시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경령전은 현종 18년(1027) 이후 안종과 효숙왕후의 신주를 모시는 '혼전'에서 국왕의 사대고비가 모셔진 공간이자, 국가 단위의 의례가 행해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형태가 변화된 이후의 경령전은 태조로부터 안종을 거쳐 현종에게 내려간 천명의 승습을 가시화 해주는 공간이 되었고, 이러한 공간의 상징성에 걸맞게 덕종에 의한 즉위 친고가 행해졌다. 이후 이와 같은 상징성과 제도화를 통해 덕종 이래 경령전에서 지속해서 행해진 즉위 주고는 경령전이 태묘와 다른 의의를 지니면서도 이에 버금가는 공간으로 존속하고 기능할 수 있게 해주었다.

---

127) "의례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꼭 그 정도만큼 의례의 효과가 사람들의 마음에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게 된다. (중략) 의례는 여러 성분의 결합으로 강도가 달라지는 구성물이며, 유대, **상징화**, 개인의 정서적 에너지 같은 산출물을 낳는다. (중략) 상징적 표지 또는 자신들이 집단 성원임을 떠올리게 해주는 **집단적 재현물**이 뒤르켕이 말하는 '성스러운 대상'이다. 집단 유대감으로 고양된 사람들은 크나큰 외경심으로 상징을 다루게 된다(랜들 콜린스, 진수미 역, 2009 앞의 책, 78-88쪽)." (밑줄은 필자 강조)

三. 경령전 의례의 확대와 변천

태묘가 宗統을 상징하는 것 외에 다양한 의례가 행해지는 시설로 활용된 것과 같이 경령전 역시 天命의 承襲을 상징하는 것 외에 다양한 의례가 행해지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선행 연구에서는 경령전에서 행해진 다양한 奏告에 대해 현 국왕의 직계 조상이 모셔진 공간으로 국왕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 만큼 왕실의 경사와 중요 행사가 고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128] 그러나 二장의 비교에서 확인되듯이 경령전의 주된 쓰임은 주고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주고 역시 태묘와 중복된 행위들이 다수였다. 따라서 경령전에서만 행해지던 의례를 살펴보고, 어떠한 맥락에서 해당 의례가 경령전에서 행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령전의 성격이 변화한 이후 가장 먼저 행해진 즉위 주고 외에 어떠한 의례들이 추가적으로 경령전에서 행해질지는 단번에 정례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문종대 경령전에서 행해졌던 태자 納妃에 대한 주고는 정작 태묘에만 이를 고하도록 예지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단발적이고 산발적인 주고 행위 역시 다수 발견된다.

경령전은 세 번의 시기를 거쳐 기능이 확대되고 정비되어 갔다. 첫 번째는 경령전 창건 초기인 덕종~문종대로 경령전 의례가 확대되고 제도화되어 가는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古今詳定禮》가 편찬되는 예종~의종대이다. 예지의 규정은 대부분 《고금상정례》를 토대로 작성되어 있으며, 《고금상정례》는 고려 당대의 규범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관한 책이기 때문이다.[129] 또한 《고금상정례》가 편찬된 시기를 전후로 태묘의 부묘와 체천 양상 역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다. 마지막 시기는 개경 환도 이후로 이는 경령전의 특징 중 하나였던 입지적 특성이 사라진 시기이다.

---

128) 김철웅, 2009 앞의 논문, 120쪽; 윤기엽, 2013 앞의 논문, 152쪽.

129) 《고려사》 예지의 토대가 되는 《古今詳定禮》는 의종 때 적용하던 규범과 이전에 행하던 규범을 선택하여 실은 일종의 규범집으로 의종대 전후의 사정이 다수 반영되어 있다. 즉, 고려 초부터 내려온 의례를 수집해 편집하고, 편찬 당시인 의종대를 기준으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의례를 반영한 것이다(김창현, 2011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학보》 41, 77-78쪽).

태묘가 아닌 경령전에서만 행해졌던 혹은 경령전이 강조됐던 의례를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경령전은 왕업 중흥과 천명의 승습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국왕의 四代考妣가 모셔진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이었던 만큼 하나의 범주로 규정된 의례만이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주고들이 경령전에서 행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령전과 태묘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묘와 경령전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두 가지로 태묘와 달리 경령전은 국왕의 사대고비만이 봉안되었다는 점, 그리고 궐내에 자리한 시설이었다는 점이다.

<표 4> 경령전에서만 행해졌던 의례 행위

기록/행해진 시기	의례행위 [주고]	예지 규정
(《古今詳定禮》)	王太子稱名立府	○
문종 18년	태자 납비[130]	×
문종 19년	왕자 출가	×
문종 25년	연등회	×
예종 3년	부월 出還	○
예종 4년		
인종 14년	서경 반란 평정	×
의종 3년	元子탄생	○
명종 7년	자책하는 글	×
명종 16년	탈상	×
(《동국이상국집》)	객사사퇴연	×
(《동국이상국집》)	경행일	×
원종 원년	환국	×

사료상 덕종이 즉위를 고한 이후 경령전이 의례의 장소로 활용되는 모습이 확인되는 시기는 문종대이다. 문종은 경령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태자가 비를 맞이하자 이를 경령전에 고하였고,[131] 자신의 아들인 王煦[大覺國師 義天]를 승려로 만드는 의례 역시 경령전에서 행하였다.[132] 한편 태자 납비에 대한 주고는 문종대 이후로는 경령전 주고

130) 태자납비는 경령전에서만 행해졌던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덕종의 즉위 친고 이후 《고려사》에 기록된 경령전에서의 첫 의례 행위이므로 본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131)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18년 11월 기묘.
132)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19년 5월 계유.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예지에서 역시 경령전이 아닌 태묘에서만 이를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왕자의 出家 사례는 태조대부터 시작되나, 왕실 자제의 출가가 관행화되는 것은 문종대부터이다.[133] 문종은 아들 중 王煦, 王竟, 王璟을 출가시켰다.[134] 왕실 출신 승려들은 보통 궁궐에서 출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135] 문종의 아들로서 가장 처음 승려가 된 왕후는 경령전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그러나 5년 뒤인 문종 24년(1070) 왕탱이 승려가 되었을 때는 현화사에서 이를 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136]

이후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경령전에서 祝髮을 한 인물은 의천이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의례가 점차 정비되는 과정에서 왕실 자제들이 출가할 경우 大內 어느 공간에서는 축발을, 그리고 이에 대한 주고는 경령전에서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천 외에 왕실 자제 출가와 관련하여 경령전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고려사》 예지에서도 별다른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정확한 실제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처럼 경령전에서의 태자 납비 주고와 왕자 축발은 모두 문종대 단발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령전 창건 초기의 이러한 시도는 비록 경령전에서 행해야 할 행위가 정례화되지는 않았으나, 즉위가 친히 고해지는 국가 단위 공간이자 사대고비가 모셔진 공간으로써 이에 걸맞은 다양한 의례를 행하고자 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국왕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의례가 비교적 먼저 시행되었던 것은 경령전 봉안 대상이 국왕의 사대고비였다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元子誕生賀儀와 王太子稱名立府儀는 이러한 경령전의 특성이 더욱 적용된 의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 예지에서는 원자탄생하의는 경령전에서만, 왕태자칭명입부의의 경우 경령전에서는 親告를, 태묘에서

133) 한기문, 1998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77쪽.
134)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 문종 왕자 대각국사 왕후; 문종 왕자 도생승통 왕탱; 문종 왕자 총혜수좌 왕경.
135) 이정훈, 2009 〈고려전기 왕실 출신 승려들의 출가와 활동〉 《역사와현실》71, 93쪽.
136)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24년 5월 임인.

는 有司가 이를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7] 경령전의 봉안 대상이 국왕의 사대고비였다는 특성이 경령전에서 해당 의례를 행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태묘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태묘와 경령전의 차이점 중 하나는 부묘·봉안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한 '廟議의 有無'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덕에 의해 부묘와 체천이 이루어지는 태묘는 누구를 모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나, 국왕의 사대고비로서 봉안되는 경령전은 누가 모셔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이었다.

종묘(태묘)는 始祖 이하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셔 국가의 건국 시조로부터 왕위의 繼承 관계를 宗法 사상하에 체계 있게 정비한 공간이다.[138] 종법은 기본적으로 혈연관계를 구성하는 원리로 출발했지만, 비혈연적 관계들로 구성된 제국의 통치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親의 추상성을 넘어서 시각적이고 보편적인 원리가 필요했다.[139]

後漢의 元帝로부터 哀帝 즉위 초에 이르는 묘의의 담론은 이러한 親과 尊의 조율을 7廟 속에 관철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공덕의 강조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애제 이후의 태묘는 親親의 恩과 尊尊의 大義가 어우러져 있는 공간으로서 의의가 있게 된다.[140] 한편 태묘의 이러한 의의는 공덕에 따른 부묘로 인한 묘의가 지속해서 발생할 것을 암시한다.

고려에서 역시 태묘 건립 이후 묘의가 이루어졌다. 덕종 2년(1033) 현종이 태묘에 부묘되면서 태묘의 9실은 만실이 된다.[141] 이는 곧 덕종이 태묘에 모셔질 때, 모셔져 있던 선왕 중 누구를 체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발생할 것을 의미했다. 덕종을 부묘하며 이루어진 정종 2년

---

137) 《고려사》 권65, 지19 예7 가례 원자탄생하의; 권66, 지20 예8 가례 왕태자칭명입부의.

138) 임민혁, 2004 〈묘호의 예제원리와 조선의 수용〉 《국사관논총》 104, 3쪽; 한형주, 2016 앞의 책, 62-63쪽.

139) 김용천, 2007 《전한후기 예제담론》선인, 21-22쪽.

140) 《漢書》 권73, "於是上重其事, 依違者一年." 乃下詔曰, "蓋聞王者祖有功而宗有德, 尊尊之大義也. 尊親廟四, 親親之至恩也."; 김용천, 2007 〈前漢末의 廟議와 功德·宗變論 — 宗法관념의 변용과 확장 —〉 《중국고중세사연구》 18, 343쪽.

141) 《고려사》 권5, 세가5 덕종 2년 8월 무오.

(1036)의 묘의에서는 旁親인 혜종·정종·광종·대종을 모두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고, 해당 주장이 衆論이 될 정도로 고려 초의 태묘는 혈연관계에 따른 昭穆의 구성이 중시되는 모습을 보인다.[142] 이러한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예종 9년(1114) 이후이다.

보통 소목의 조정은 선왕을 태묘에 부묘할 때 실이 부족한 경우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종 9년(1114) 예종은 昭穆不變論에 따라 성종의 신주를 康陵으로 옮기고, 태묘에서 가장 먼저 체천되었던 혜종의 신주를 다시 태묘의 2실로 모셔온다.[143] 이는 고려에서 태묘가 건립된 이후 선대 국왕의 薨逝와 관계없이 처음으로 신주가 出納된 일이다.

그러나 예종이 훙하고, 인종이 예종을 태묘에 모시면서 혜종은 다시 체천되는데,[144] 모셔져 있던 선왕 중 4代祖를 넘어선 선왕은 혜종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혜종은 '공덕'이 있는 분으로 그 묘를 헐어버릴 수 없다며 조정의 반대가 이루어진다.[145] 이처럼 혜종은 공덕이 있는 선왕이며, 공덕이 있는 선왕은 태묘에 계속해서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예종 9년(1114)을 전후하여 찾아진다.

예종 9년(1114) 체천되었던 혜종이 再祔廟된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와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146] 그러나 당시 혜종이 다시 부묘되었던, 그리고 불천으로 대대로 태묘에 모셔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던 논리는 혜종의 '공덕'이었다. 즉, 혜종은 태조와 함께 개국을 도와 나라를 크게 구원한, 후손들이 法받을 임금이라는 점이었다.[147]

---

142) 《고려사》 권61, 지15 예3 길례대사 제릉 정종 2년 12월 미상.

143) 《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 9년 10월 병오.

태묘	不遷	1昭	1穆	2昭			2穆		
	태조	혜종	현종	덕종	정종	문종	순종	선종	숙종

144) 《고려사절요》 권9, 인종공효대왕 인종 2년 4월 미상.

145) 《고려사》 권61, 지15 예3 길례대사 제릉 인종 2년 7월.

146) 예종대에 혜종을 다시 부묘한 이유는 '昭穆之序 一定不異'라는 소목불변론에 맞추어 선왕들을 부묘하기 위함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종대에 소목불변론에 따라 소목을 재정비한 이유로는 여진 정벌이 실패로 끝난 이후 문화적인 부분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으며, 이 시기에 다양한 禮制들이 송으로부터 들어오고 정비되었음이 주목되었다(박종기, 1993 〈예종대 정치개혁과 정치세력의 변동〉 《역사와현실》 9, 50-51쪽; 최순권, 1998 앞의 논문, 59쪽; 채웅석, 2021 《고려중기 정치사의 재조명》, 일조각, 134-135쪽).

147) 《동인지문사륙》 권5, 冊文 〈禘大廟第二室加謚冊文仁〉 崔惟淸.

이처럼 예종대 이후 태묘의 묘의에서는 親親만이 아닌 尊尊의 비중 역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맞물려 경령전은 공덕의 유무와 무관하게 현왕의 사대고비로서 모셔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특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령전이 원자탄생하의와 왕태자칭명입부의가 수행되어야 할 장소로 《고금상정례》에 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전하는 원자탄생하의와 관련된 기록은 한 건에 불과하고, 왕태자칭명입부의의 경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의례가 경령전에서 행해지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의례에 규정된 세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경향과 《고금상정례》의 특성상 숙종, 늦어도 예종 대에는 두 의례가 예지의 규정처럼 경령전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자탄생하의를 살펴보자면 국왕은 元子 탄생 후 3일간 正殿과 便殿에서 사무를 보지 않고, 4일째 되는 날 大觀殿에서 하례를 받았다. 이후 하례 받는 것을 마치고 齋戒 한 후 7일째 되는 날 원자의 탄생을 경령전에 고하는 것으로 예지에 규정되어 있다. 예지의 규정과 같이 원자의 탄생을 고한 사례가 의종대에 찾아진다.[148]

의종대의 사례는 예지의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나 다른 원자탄생하의에 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아 의종 전후의 정확한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의종대 전후로 경령전이 원자 탄생을 고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여겨졌다는 정도의 해석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이유로 원자 탄생을 고할 장소로 경령전이 적절하다고 여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원자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례》와 《예기》에서는 각각 원자를 "元子猶士也. 天下無生而貴者也.", "天子之元子士也."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처럼 원자라는 자리는 공식적으로 宗統을 잇는 위치는 아니었다. 순종의 왕태자 책문과 의종의 왕태자 책문을 보면 두 책문 모두 '長子를 後嗣로 삼는 것은 通規'라며 책문을 시작하고 있지만,[149] 이는 어린 나이임에도 원자로서 장차 嗣王이 될 자

148) 《고려사》 권17, 세가17 의종 3년 4월 무인 "戊寅 王妃王氏生元子."; 4월 신사 "辛巳 百官賀生元子."; 5월 갑신 "五月 甲申 以元子生親告于景靈殿."

149) 《東人之文四六》 권5, 冊文〈王太子冊文〉 崔惟善 "立嗣以長, 歷百世以弗移."; 《東

리에 오른 것에 대한 의미 부여였을 뿐이다. 통상적인 규정으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나 원자라는 자리가 다음 국왕위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예종 9년(1114) 이전에는 비록 尊尊이 강조되는 사례가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태묘는 어디까지나 역대 선왕선후가 모셔진 大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태묘는 공식적으로 책봉을 받아 闡明된 후계자가 아닌 繼體가 될 혹은 되었으면 하는 원자의 탄생을 고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장소로 여겨진 것이다.

한편, 경령전은 덕종 이래로 행해진 즉위 주고로 천명의 승습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공간에서 원자의 탄생을 국왕이 친히 고한 것은 비록 아직은 士에 불과하나 계체가 될 수 있는 아들에게 정통성을 실어주고자 한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원자 이외의 왕자와 공주의 탄생은 경령전에서 고하지 않았던 것[150]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왕태자칭명입부의에 대한 주고는 원자탄생하의처럼 경령전에서만 행하도록 규정된 것은 아니다. 칭명입부에 따른 주고는 경령전뿐만 아니라 태묘와 별묘 그리고 神祠에서 역시 행해졌다. 다만 태묘와 별묘 그리고 신사의 경우 遣使로 하여금 주고하게 하였고, 경령전의 경우 왕태자가 칭명입부 한 당일 국왕이 친히 경령전에 나아가 이를 고하도록 하였다. 칭명입부 외에 왕태자와 관련한 다른 의례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은 보이지 않는데, 왕태자를 책봉할 때는 태묘와 경령전 및 제릉과 사당에, 왕태자가 元服을 입을 때에는 태묘와 별묘 및 경령전에 동일하게 주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151] 그렇다면 왕태자와 관련된 여러 가례 중 왜 칭명입부만은 국왕이 경령전에 친히 고하도록 하였을까.

태자는 일반적으로 父王 재위 중 책봉의 절차를 거쳤고, 이때부터는 왕위계승자로서 특별한 예우를 받았다. 또한, 태자의 교육과 신변 보호를

文選》 권28, 冊 〈王太子冊文〉 金富軾 “易以一索爲長男之位.”

150) 《고려사》 권65, 지19 예7 會賓附表 “王子·王姬誕生, 則無除視朝, 無告景靈殿.”

151) 《고려사》 권66, 지20 예8 가례 冊王太子儀; 王太子加元服儀.

위한 관원과 재원인 東宮官이 배속되었다.[152] 고려에서 칭명입부는 대개 이러한 冊太子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153] 즉, 칭명입부에 대한 주고는 원자탄생하의에 따라 경령전에 탄생을 고한 원자가, 이제 태자로 책봉되기에 앞서 이름을 칭하고 府를 세웠다는 것을 주고한 것이다.[154]

태자를 책봉하기에 앞서 立太子에 대한 사례가 찾아지는데, 입태자와 책태자에 대한 사료가 모두 있는 경우는 문종, 숙종, 희종대이다. 문종은 문종 7년(1053) 11월 태자를 세우고, 8년(1054) 2월에 태자를 책봉하고 있다.[155] 숙종의 경우 3년(1098) 3월에 입태자와 함께 태자부가 만들어지는데, 책봉은 5년(1100) 1월에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희종의 경우 즉위년(1204) 11월에 원자를 왕태자로 세우나, 책봉의 경우 7년(1211) 4월 가원복의와 함께 행해진다.[156] 이처럼 고려에서는 책태자 이전 입태자가 행해졌으며, 입태자는 곧 칭명입부의 立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선 문종, 숙종, 희종의 사례처럼 입태자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으나 입부 혹은 입부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책태자 이전 입부가 행해졌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입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東宮侍衛公子[157]와 東宮侍衛給使의 임명 여부이다. 동궁의 관원은 아니

---

152) 김창겸, 2008 〈고려 顯宗代 東宮官 설치〉 《한국사학보》 33, 133-134쪽.

153) 김철웅, 2011 〈고려시대의 태자 책봉과 책봉례〉 《역사와 경계》 80, 34-35쪽; 김재명, 2012 〈高麗前期의 東宮侍衛公子〉 《사학연구》 107호, 109쪽.

154) 稱名의 경우 예지에 따르면 立府와 함께 이루어졌어야 하나, 입부와 함께 칭명이 행해진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賜名이라 하여 원자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된 사례는 확인된다. 문종은 7년 11월 태자를 세우면서 勳이라는 이름을 새로 사하였는데(《고려사》 권7, 세가7 문종 7년 11월 기축), 문종대 이러한 기록이 입태자와 함께 賜名이 이루어진 유일한 사례이다. 물론 인종, 의종, 효령태자에게 책태자 이전 이름이 사해진 사례가 확인되나(《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 9년 11월 무자; 권16, 세가16 인종 9년 4월 무인; 권18, 세가18 의종 7년 1월 계묘), 해당 賜名이 입부와 함께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해당 사례 외에는 원자에게 이름이 사하여진 기록은 찾아지나 그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입부를 토대로 칭명입부가 어느 시점에 행해졌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55) 《고려사》 권7, 세가7 문종 7년 11월 기축; 문종 8년 2월 계묘; 권9, 세가9 순종 총서.

156)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 3년 3월 계해; 《고려사절요》 권6, 숙종명효대왕 숙종 3년 3월 미상;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 5년 1월 을미; 권12, 세가12 예종 총서; 권21, 세가21 희종 즉위년 11월 갑자; 희종 7년 4월 신묘.

157) 東宮侍衛公子는 春坊侍衛公子, 春坊侍學公子, 春坊公子, 侍學公子, 春坊倚學으로도

지만, 동궁에 소속되어 있는 동궁시위공자와 동궁시위급사는 문종 8년(1054) 이래로 항구적인 제도가 되었는데, 시위공자의 주된 역할이 태자를 모시고 학문을 하는 것인 만큼, 보통 태자부 설립 무렵에 뽑혔다.[158]

의종대의 경우 春坊學友[동궁시위공자]의 존재가 이미 의종 5년(1151)에 확인된다.[159] 즉, 입태자가 적어도 5년(1151)을 전후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한편, 의종대 태자 책봉은 7년(1153)에 행해졌다.[160] 신종대 역시 신종 즉위년(1197)에 춘방시위공자와 급사를 충당하고 있으나, 태자 책봉은 3년(1200)에 행해졌다[161]. 의종과 신종 외에도 고종, 충렬왕대 역시 이러한 사례가 확인된다.[162] 이처럼 고려에서는 책태자 이전 입태자[입부]가 행해졌으며, 이는 칭명입부에 따른 주고 역시 태자 책봉 이전에 행해졌음을 의미한다.

태자책봉의는 국왕의 지위와 권위를 계승하라는 뜻을 태자에게 전한 것이자, 왕위계승자의 선정을 천하에 알리는 행위였다.[163] 칭명입부의 경우 태자 책봉 이전에 행해졌지만, 태자 책봉 이전 제도적으로 태자위를 보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왕태자와 관련된 여러 의례 중 왕태자칭명입부만을 경령전에서 친히 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이는 고려에서 왕태자가 될 수 있었던 인물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불렸다(김재명, 2012 앞의 논문, 93-98쪽).

158)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동궁관; 김재명, 2012 앞의 논문, 98-112쪽; 동궁관직 임명을 통해서 태자의 입부 여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태자가 없다고 해서 태자부 관직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김호, 2005 〈唐代 太子府의 構造와 運用〉 《중국사연구》 36, 127-128쪽). 이에 동궁시위공자와 동궁시위급사의 임명 여부를 통해 입부 여부를 추정하고자 한다.

159) 《朴仁碩墓誌銘》에 따르면 박인석은 인종 21년(1143)에 태어나 8세(의종 5년, 1151)에 春坊學友에 보임되었다. ("公甫八歲, 補春坊學友.")

160)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7년 4월 기묘.

161)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동궁관; 권21, 세가21 신종 3년 4월 경자.

162) 고종 대의 경우 14년 1월에 태자부가 설립되고, 같은 해 8월에 侍學公子를 선발하지만, 태자 책봉은 22년에 행해졌다(《고려사》 권22, 세가22 고종 14년 1월 무오; 8월 병인;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22년 1월 미상). 충렬왕 대의 경우 2년 8월에 세자부 侍學公子에 대한 시험을 행하였고, 세자 책봉은 3년 1월에 행하였다(《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 8월 경오; 충렬왕 3년 1월 임인).

163) 김선미, 2014 〈고려 문종대 王太子 冊封과 太子 관련 制度 정비의 의미〉 《역사민속학》 45, 265쪽.

있다. 고려에서 태자로 책봉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왕의 원자뿐이었다. 唐代 스무 명의 황제 중 長子에 의한 황위 승계는 여섯 번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태자 책봉이 여섯 차례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高祖 武德 원년(신라 진평왕 40년, 618)부터 玄宗末(신라 경덕왕 15년, 756)까지 태자는 총 13명이었고, 이 가운데 장자로서 태자에 책봉된 경우는 4명에 불과하다.[164] 조선 역시 각각의 국왕에 대한 후계자 책봉은 빠짐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후계자가 항상 적장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국왕의 후계자로서 원자가 아니면서 태자로 책봉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국왕 대에 태자가 책봉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태자로 책봉된 인물은 오직 국왕의 원자뿐이었다. 즉, 태자로 책봉하기에 앞서 원자가 태자에 책봉될 것을 정치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칭명입부를 경령전에 고한 것은 원자탄생하의가 경령전에서만 행해졌던 것의 연장 선상으로 파악된다.

원자의 칭명입부 상태는 태자로 책봉을 받지 않았을 뿐, 어디까지나 왕태자 바로 직전의 상태였다. 그러므로 원자탄생하의와는 달리, 칭명입부의 경우 경령전을 포함한 태묘·별묘 그리고 신사에도 이를 고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책봉을 받아서가 아닌 원자라는 자리를 토대로 태자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원자탄생생하의에 이어 칭명입부를 경령전에서 친히 고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달리 원자탄생하의와 왕태자칭명입부의 대한 주고는 국왕이 친히 고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종대 이후 그 기록이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시기적 특성상 원 간섭기 이후로는 원 출신의 왕비 소생이 원자로 받아들여졌으며, 책봉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165] 즉, 의례 자체가 시행되지 않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경 환도 이후 경령전이 더이상 국왕이 생활하는 궐내에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즉, 국왕의 생활 반경이 아닌 본궐에 경령전이 위치하게 된 만큼 국왕이 아닌 유사에 의해 의례가 수

164) 김호, 2005 앞의 논문, 121쪽.
165) 김철웅, 2011 앞의 논문, 41쪽.

행되었고, 이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문종은 경령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태자 납비와 왕자[왕후]의 축발 외에 경령전은 특별 연등회 이후 배알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본래 정종 4년(949) 이후 연등회 때에는 태조 진전에 참배하는 것이 恒例였다.[166] 실제로 연등회 소회일에 국왕들이 봉은사 태조 진전을 배알한 사례는 정종 4년(949) 이후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기록되어 있다.

반면 연등회 날 경령전과 관련된 기록은 문종대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종 25년(1071) 문종은 특별 연등회를 열고 이후 경령전을 참배하는데,[167] 해당 기록이 연등회와 경령전이 연동된 유일한 사례이다. 따라서 경령전 배알이 행해진 문종 25년(1071)의 연등회는 특설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고려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특설 연등회는 문종대에 시행되었는데, 문종은 21년(1067) 1월 흥왕사에서 특설 연등회를 열었으며, 경령전을 배알한 25년(1071) 2월 무인의 연등회 역시 특설 연등회였다. 이후 26년(1072)은 중광전에서, 27년(1073)은 봉은사에서, 마지막으로 31년(1077)에는 중광전에서 특설 연등회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168]

이처럼 문종은 봉은사 외에도 흥왕사, 중광전에서 연등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봉은사 이외의 공간에서 행해진 특설 연등회 중 謁祖眞儀를 행한 특설 연등회의 경우 봉은사 태조 진전이 아닌 궐내 태조의 신어가 모셔진 경령전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문종이 경령전을 배알한 기록에서 연등회가 행해진 장소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후의 경향성을 보았을 때 봉은사 이외의 장소에서 연등회가 개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문종대 이후로 특설 연등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예종대 두 차례 別禮 연등이 행해지기는 하지만 봉은사에서 정기적

166) 《고려사》 권6, 세가6 정종 4년 2월 계미.
167)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25년 2월 신미.
168)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21년 1월 무진; 문종 25년 2월 무인; 권9, 문종 26년 2월 갑술; 문종 27년 2월 정유; 문종 31년 2월 계묘.

인 연등회를 한 이후 며칠 뒤 중광전에서 다시 한번 연등회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169] 또한, 《고금상정례》가 정비된 시기의 국왕들은 모두 상원연등회 당시 봉은사에서만 알조진의를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록의 누락일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았을 때 문종대 특설 연등회 이후 행해진 경령전 배알은 문종의 다양한 경령전 활용과, 국왕이 거주하는 궐내에 자리했던 경령전의 입지적 특성이 합쳐진 일시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등회 알조진의가 문종대 일시적으로 경령전에서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달리 경헹 주고의 경우 개경 환도 이전까지는 경령전에서 지속해서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행은 정종대 매년 3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의례로 확립되었다.[170]《동국이상국집》에 따르면 구정에서 반야경을 받아 밖으로 나가 경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경령전에 아뢰는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171]

경령전에서 경행을 했다는 기록은 《동국이상국집》이 유일하므로 경행에 앞서 경령전에 주고를 행하기 시작한 구체적인 시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종대는 고려 시대 불교 의례의 전개에서 주요 불교 의례 혹은 불교에 연원이 있는 의례들이 상례화 된 시기였던 만큼,[172] 이 시기 경행에 대한 경령전 주고 역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행과 관련된 규정은 《고려사》 예지에 남아 있지 않은데, 이는 연등회와 팔관회가 嘉禮雜儀에 분류된 만큼 《고금상정례》에서는 규정되어 있었지만, 예지에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개경 환도 이후 본궐에 위치한 경령전은 더는 이전과 같이 국왕이 거주하던 공간과 거리가 가까운 시설은 아니었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도 궐내에서 출발한 경행에 대한 주고를 경령전에서 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편 《고금상정례》가 정비될 시기에 경령전에서 시행된 의례도 존재한다. 경령전에서 행한 鈇鉞[173] 出還이 이에 해당한다. 《고려사》 예지

---

169) 《고려사》 권14, 세가14 예종 10년 2월 무오; 예종 11년 2월 경진; 예종 11년 2월 갑신.
170) 《고려사》 권6, 세가6 정종 12년 3월 신축.
171) 《동국이상국집》 권40, 〈經行日景靈殿告事祝〉
172) 강호선, 2019 〈고려 국가불교의례와 경행〉《한국사상사학》62권, 39쪽.

군례의 견장출정의와 師還儀에는 부월 출환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수를 출정시킬 때 국왕은 大觀殿[天德殿; 乾德殿]에서 원수에게 부월을 전해주었고, 군사가 돌아왔을 때 역시 원수는 대관전에서 국왕에게 부월을 還納해야 했다. 이때 부월 출환을 주고하는 장소는 경령전이었다. 견장출정의에 규정되어 있듯이 출정할 당시 주고를 할 사안은 두 가지로, 이 중 장수를 출정시키는 것은 태묘에 그리고 부월 출환에 관한 주고는 경령전에서 이루어졌다.[174]

선행 연구에서는 부월 출환을 경령전에 주고한 것에 대해 왕권과 왕실의 위상 구축, 국가의 중요 사안에 대한 정당성 획득으로 해석하거나 국왕의 직계 조상이 모셔져 있는 만큼 의미가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75] 그러나 전쟁과 관련하여 태묘에서 행했졌던 의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사안의 중요성이나 경령전의 특별성 때문에 부월 출환에 대한 주고가 경령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176]

부월 하사에 대한 첫 기록은 성종 8년(989)에 찾아지는데, 성종은 병마사에게 직접 부월을 내려 변방을 전적으로 다스리게 했다.[177] 이후 부월과 관련된 기사는 동여진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숙종 대에 다시 찾아진다. 숙종 9년(1104) 숙종은 동여진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정월 그리고 2월에 각각 宣政殿과 重光殿에서 부월을 하사하였다.[178] 그러나 부월 출

173) 부월은 제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옛날에 주공이 제후들을 명당의 정해진 위치에 세우고 조회를 시켰을 때, 천자는 도끼가 그려진 병풍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섰다고 한다(《禮記》 明堂位). 또한, 天子로부터 人命을 해칠 수 있는 최종적 권위를 상징했던 만큼, 군을 통솔하는 원수나 병마사에게 내려졌었다(이범직, 1983 〈高麗史禮志 「軍禮·賓禮」 의 검토〉 《명지사론》 1, 62-63쪽; 한정수, 2019 〈고려시대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 및 사환의(師還儀)의 성립과정과 내용〉 《군사》 110, 182쪽).

174) 《고려사》 권65, 지18 군례 遣將出征儀; 師還儀.

175) 김철웅, 2009 앞의 논문, 120쪽; 윤기엽, 2013 앞의 논문, 152쪽; 한정수, 2019 앞의 논문, 185쪽.

176) 태묘에서는 전쟁 및 소요와 관련하여 동북 여진족을 물리친 성과를 고하거나, 神兵으로 전쟁을 도와달라고 제를 올리거나, 전쟁에 앞서 출병 여부를 점치거나, 승전을 빌며 나라를 지켜 주기를 祈告하기도 하였으며, 왜구 격퇴를 위한 기고 등의 의례 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려사》 권9, 세가9 문종 35년 2월 병자; 권10, 세가10 선종 4년 1월 기사; 권13, 세가13 예종 4년 5월 갑인; 권24, 세가24 고종 41년 10월 무자; 권39, 세가39 공민왕 8년 5월 병오; 권96, 열전9 제신 윤관).

177) 《고려사절요》 권2, 성종 8년 3월 미상.

178) 《고려사》 권12, 세가12 숙종 9년 1월 계미; 2월 을축.

환에 대한 주고를 했다는 기사나 부월 출환과 관련된 행위가 경령전에서 행해졌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숙종대까지는 경령전이 부월과 관련된 의례 행위의 장소로 활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부월과 관련된 행위가 경령전에서 행해진 사례는 예종 대에 처음으로 찾아진다. 예종 3년(1108) 4월 윤관과 오연총은 여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경령전에서 복명하고 부월을 반환하였다. 이는 경령전에서 부월 출환과 관련된 의례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사례이다. 다음 해인 예종 4년(1109) 4월 역시 경령전에서 부월 출환이 이루어진다.[179] 이처럼 예종대 부월 출환이 경령전에서 행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예종대 당시 정세와 연관 지어 이해될 수 있다. 예종은 부왕인 숙종대의 정치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려 하였는데,[180] 여진과의 전쟁 역시 선왕인 숙종의 뜻을 이은 것이었다. 이는 예종이 중광전에 나아가 佛龕에 감추어둔 숙종의 발원문을 양부 대신들에게 보이면서 여진 정벌에 대해 논하는 모습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181]

그러나 관료 대부분은 여진 정벌에 대해 민에게 고통을 주고, 재정 부담이 크며, 외교적으로 거란과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보인다.[182] 또한, 예종이 즉위 후 두 달 만에 내린 교서를 보면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텅 빌 정도로 전국적인 流民이 발생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과 질병이 돌고 있었으며, 구휼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83]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대의 동원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나, 예종은 여진 정벌을 위해 17만 명의 대규모 군대를 동원했다.[184]

---

179) 《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 3년 4월 기축; 권13, 세가13 예종 4년 4월 무인.

180) 박종기, 1993 앞의 논문, 42-43쪽; 이바른, 2017 〈고려 예종대 胡宗旦의 행적과 평가〉 《한국민족문화》64, 1-2쪽; 권기현, 2020 〈고려시대 闕兵의 시행과 그 의미〉 《군사연구》149, 40-41쪽; 예종의 이러한 기조는 예종 원년에 내린 조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종은 天壽寺 공역의 가부 논의에 대해 선왕[숙종]이 공사를 할 때는 아무도 말리지 않다가, 이제 와 공사를 중지하라는 간언은 옳지 않다며, 선왕의 원래 뜻을 따를 것이라고 하였다(《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 원년 7월 신축).

181) 《고려사》 권96, 열전9 제신 윤관.

182) 채웅석, 2021 앞의 책, 123-126쪽.

183) 《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 즉위년 12월 갑신.

184) 민현구, 2006 〈예종의 국정운영과 궁중생활〉 《한국사시민강좌》39, 10-11쪽; 김

이처럼 예종 즉위 초 여진 정벌은 모든 관료에 의해 적극적으로 지지되지 않았으며, 당시 경제적 상황 역시 좋지 않았다. 따라서 숙종의 遺旨를 잇고자 하는 예종으로서도 여진과의 전쟁은 출병 여부를 태묘에서 점칠 정도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묘의 점괘에 따라 출병이 결정된 이상,[185] 숙종 9년(1104)과 같은 패배는 없어야 했다. 예종의 경령전 부월 출환은 아마 이와 같은 정세와 맞물려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출정을 결정한 예종은 그의 결의와 祈願을 관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이에 통상적으로 부월의 출환이 행해지던 내전이 아닌 내전 바로 근처에 자리하고, 태조와 사대고비가 봉안된 경령전에서 부월 출환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궐내에 자리한 태조의 신어가 모셔진 공간이었다는 특징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종 이후의 일이기는 하나 인종은 서경 반군과의 전투에서 관군이 패하고 돌아오자 경령전에 모셔진 태조의 신어에만 자책하는 글을 지어 고했다.[186]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예종이 경령전에서 부월을 출환했을 때 더욱 강조되었던 것은 경령전에 봉안된 태조의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태조는 삼한을 편안하게 만든 인물로, 漢 高祖가 천하를 얻은 것처럼 무공을 떨쳤고, 殷 湯王이 군사를 통솔하고 정벌한 것처럼 발흥한 시조였다.[187] 즉 태조는 신성성과 정복 군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존재였다.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나 신종 대에는 이규보가 봉은사의 태조 진전인 孝思觀에 나아가 반란 세력이 제압되기를 바라는 글을 올린 것처럼,[188] 태

순자, 2012 〈고려중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여진 전쟁〉 《한국중세사연구》32, 61쪽.

185) 《고려사》 권96, 열전9 제신 윤관.

186) 해당 기사에서는 어떤 이유로 명종이 자책하는 글을 지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후 기사를 보았을 때 3일 전인 7월 7일 서경 반군과의 전투에서 관군이 패한 것에 대한 자책 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7년 7월 갑진; 7월 정미).

187)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9년 9월 기묘 “我太祖應期降世, 敷德臨人, 百郡來庭, 三韓安堵.”; 권22, 세가22 고종 2년 10월 을미.

188) 《동국이상국집》 권38, 道場齋·醮·疏·祭文 〈奉恩寺 告太祖眞前文〉; 東京招討兵馬 때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종 5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202년

조는 전쟁 혹은 국내 소요에 있어 단독으로 祈告의 대상이 될 만큼 남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예종대 시행된 경령전에서의 부월 출환은 이후 인종대를 지나 의종대 《고금상정례》가 편찬되면서 직접적인 부월 출환이 아닌 주고의 장소로 정비 및 규정된다.[189] 그러나 《고려사》 예지의 규정과 같이 부월 출환에 대한 주고가 경령전에서 행해졌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종은 서경 반적 토벌에 나가는 김부식에게 천복전에서 부월을 하사하였고, 고종은 거란과의 전쟁에 앞서 원수인 정숙첨에게 문덕전에서 부월을 하사했다. 이후 거란과의 전쟁에서 원수가 된 조충은 대관전에서 부월을 하사받았다. 이후 원종 14년(1273), 공민왕 5년(1356), 공민왕 10년(1361), 우왕 3년(1377)에도 부월의 하사는 이루어졌으나 하사 장소와 하사에 따른 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190] 이는 기록의 누락 또는 개경 환도 이후 경령전이 더이상 국왕이 생활하는 궐내에 위치하지 않은 만큼 입지적 특징이 변화하였고, 이에 국왕이 직접 부월 출환에 대한 주고를 하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령전에서는 이처럼 규정된 그리고 규정되지 않은 다양한 의례들이 행해졌다. 앞으로 살펴볼 규정되지 않았던 의례의 경우 경령전의 특징 중 하나인 국왕이 거주하는 궐내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이 강하게 적용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령전은 즉위를 고하는 장소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 이러한 인식은 개경 환도 이후 정치적 중심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본궐에 위치한 경령전까지 굳이 수레를 타고 가 즉위를 고한 국왕들의 행보를 보았을 때 단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10월 경주와 영주의 별초군 간에 싸움이 일어나자 경주를 토벌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앞서 봉은사에 고한 것으로 보인다(《고려사》 권21, 세가21 신종 5년 10월 미상).

189) 한편 예종대 경령전에서 부월 출환이 이루어진 이후 인종 14년 서경 반란의 평정을 경령전에서 고하는데(《고려사》 권16, 세가16 인종 14년 4월 경자), 일회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예종대 이래로 부월 출환이 경령전에서 행해지고, 주고의 장소로 규정되면서, 경령전이라는 공간과 군례가 일정 부분 연동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경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국왕이 친히 이를 고하기에 궐내 태조가 모셔진 시설인 경령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190) 《고려사》 권65, 지18 군례 인종 13년 1월 미상; 고종 3년 12월 기미;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5년 9월 미상; 원종 14년 2월 미상. 《고려사》 권65, 지18 군례 공민왕 5년 9월 계미; 권113, 열전26 鄭世雲;《고려사절요》 권30, 1377년 9월 미상.

개경 환도 이전 국왕이 거주하는 궐내에 자리했다는 입지적 특성만을 가지고 경령전의 의의를 논하는 것은 자칫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태조와 국왕의 사대고비가 모셔진 공간으로서 내전 바로 근처에 자리 잡고 있던 특징 아래에 강화 천도 이전까지 여러 의례가 행해졌던 것 또한 사실이다. <표 4>에서 확인되듯이 강화 천도 이후에는 경령전에서 원종이 환국을 고한 사례를 제외하면 즉위 주고 외에 다른 의례 행위가 행해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물론 경령전이 국왕의 주고 행위를 고려하여 내전 근처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전 근처 태조와 국왕의 사대고비가 모셔져 있는 공간으로서 궐 안에서 일어나던 일들 그리고 산발적인 국왕의 친고가 경령전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경령전은 내전에 있는 만큼 태묘에 비해 의례를 행하기 위한 준비가 간단했으며, 의례 절차 역시 당일에 끝날 만큼 齋戒를 위한 별도의 날도 필요하지 않았다.[191] 따라서 경령전은 태묘에 비해 국왕의 단발적인 親行이 가능했다.

탈상의 경우 명종 16년(1186) 명종이 자신의 어머니인 공예태후 임씨의 탈상을 경령전에 고한 것으로,[192] 원종의 환국 주고를 제외하고 강화 천도 이전 행해진 마지막 경령전 의례이다. 선왕선후의 상장례는 사찰과 연동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명종 대에 어떠한 상황에서 탈상을 경령전에 고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아마도 공예태후를 경령전에 봉안하기에 앞서, 모셔져 있던 선왕선후를 배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국왕이 거주하는 궐내에 자리한 경령전의 특성에 따라 경령전에서 행해야 할 의례로 규정되지 않은 국왕의 주고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환국의 경우 국왕의 즉위 주고와 俗節 제사 외에 기록된 경령전에서 행해진 마지막 의례 행위로 경령전의 입지적 특성이 도드라지는 행위 중 하나이다. 강화로 천도한 이후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 본궐에 자리한 경령전에 환국을 고한 것은 왕조의 본궐에 자리한 조상들이 모셔진 공간이라는 경령전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

191) 《고려사》 권61, 지15 예3 길례대사 태묘; 경령전.
192)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6년 1월 신축.

마지막으로 살펴볼 客使辭退宴은 《동국이상국집》 祭祝[193]에서만 그 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상이나 시행 시기를 추정해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축문이 남아 있는 만큼 일회성에 그친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客使辭退宴景靈殿告事祝〉에는 궐내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이 일들이 큰 탈 없이 잘 수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만큼, 적어도 강화 천도 이전까지는 해당 의례를 국왕이 거주하는 궐내에 자리한 경령전에 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경령전에서 행해졌던 단발적이고 산발적인 의례 행위들을 살펴보았을 때 강화 천도 이전에는 기록된 의례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의례들이 경령전에서 행해졌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경령전이 국왕이 거주하는 궐내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례들이 행해졌다는 것은, 강도에서 돌아온 이후 본궐을 복구시키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러한 의례들이 더는 빈번하게 행해지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 국왕이 거주하는 궐내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에 따라 단발적인, 그렇지만 태조와 현왕의 사대고비가 모셔진 공간으로서 국왕이 주고할 만한 것들이 행해졌던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경 환도 이후에는 원종이 본궐에 도달하여 자신이 돌아왔음을 경령전에 고한 것 외에는 이전과 같은 국왕에 의한 단발적인 의례 행위들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개경 환도 이후 본궐이 국왕들의 거주 공간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경령전 일대를 비롯한 공간만이 의례 행위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만큼, 궐내에 자리했던 경령전의 입지적 특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의례 행위의 축소에 대해 무신정권기 왕권의 추락과 함께 경령전의 운영이 순조롭지 못했고, 기능도 현저히 축소되었으며, 원 간섭기에 들어서는 고려의 자주성 역시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94] 그러나 창건 이후 고려 말까지 천명의 승습을 상징하는 즉위 주고가 국왕에 의해 경령전에서 지속해서 행해졌던 것을 보면 단순히 위상의 문제로 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개경 환도 이후 경령전의 입지적 특성

193) 《동국이상국집》 권40, 〈客使辭退宴景靈殿告事祝〉
194) 윤기엽, 2013 앞의 논문, 158쪽.

이 사라지면서 쓰임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몽골 침략 이후 고려의 본궐은 텅 빈 폐허 상태였고, 이후 이 일대는 복구되지 않았다. 대신 여러 이궁과 별궁들이 개경 주변에 만들어 지면서 궁궐의 기능을 대신에 했다. 이에 따라 개경 환도 이후 앞서 살펴보았던 의례들과 관련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경령전은 고려 당대인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공간이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二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령전은 덕종 이후 공양왕이 즉위하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즉위를 고하는 장소로 기능할 만큼 국왕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국왕이 거주하는 궐내에 자리했던 위치적 특징이 사라진 만큼 개경 환도 이후 경령전 쓰임의 빈도 혹은 국왕의 친행은 강화 천도 이전과 비교하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맺음말

경령전은 현종대 창건 이후 다른 시기 여타의 原廟와 달리 고려 왕조가 끝날 때까지 중요한 시설로 기능했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는 국왕의 四代考妣가 모셔진 경령전의 형식에 집중하여 그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즉 왕실 家廟적인 특징을 통해 그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형식에 집중하여 경령전을 분석할 경우 태묘와 달리 경령전에 모셔지는 것이 왜 天命인지, 경령전에서는 어떻게 고려말까지 즉위의례가 행해질 수 있었는지, 행해졌던 의례들은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등이 설명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경령전의 의의는 다소 불명확해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령전이 처음 창건되었던 맥락을 토대로 경령전의 의의와 그로부터 비롯한 의례가 행해진 맥락을 밝히고자 하였다. 경령전 창건에 宋의 景靈宮이 모티브가 되었을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경령전은 현종 考妣의 侍奉 과정에서 태묘에 모시지 못한 安宗과 孝肅王后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魂殿'이었다. 부모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던 만큼 경령전에는 안종과 효숙왕후가 신주의 형태로 모셔져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靈鷲山大慈恩玄化寺之碑銘》과 《고려사》의 '祔' 용례 및 현종 18년(1027)의 加諡를 통해 확인된다.

창건 당시 안종과 효숙왕후의 '혼전'으로 만들어지고 기능하던 경령전은 어느 시점에선가 四親之殿으로 형태가 변모되고, 즉위 및 왕실 의례 奏告와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경령전에서 행해진 의례가 변했다는 것은 곧, 경령전이 기존의 성격과 다른 공간으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시호가 더해진 양상, 경령전 봉안 양상, 행해진 의례 등을 토대로 현종 18년(1027) 이후 경령전이 태조와 四代考妣가 모셔진 공간으로 개편되고 기능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태조와 사대고비가 모셔진 공간으로 형식이 변화한 이후 경령전에서는 다양한 주고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태묘와 비교해보았을 때 경령전에서 이루어진 주된 의례 행위는 주고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 주고 행

위 역시 상당 부분 태묘와 중복되는 모습으로 행해졌다. 또한, 인종 2년(1124) 안종이 이안된 이후의 경령전은 태묘에 비해 축소된 양상마저 보여준다. 그러나 경령전은 현종 8년(1017) 창건 이후 고려 말까지 존속하여 공간으로서 쓰임을 다하였다. 이에 주목한 부분이 덕종대 경령전에서 행해진 즉위 親告이다.

즉위 주고는 시조와 조상에게 내려진 천명이 承襲됐음을 보여주는 의례인 만큼 덕종은 안종의 손자이자 현종의 아들로서 태조와 안종이 모셔진 경령전에서 즉위를 고했다. 경령전은 현종말 형태의 변화 이후 태조에게 내려진 천명이 안종을 거쳐 현종에게 내려졌음을 가시화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이다. 경령전의 이와 같은 상징성은 덕종의 즉위의례를 경험한 당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즉위의례와 같은 구체적인 의례행사는 이에 대한 지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경령전은 개경 환도 이후 本闕에서 국왕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여전히 즉위를 고해야 하는 중요한 장소로 인식됐다. 이처럼 경령전은 덕종의 즉위의례 이후 의례화 과정에 따라 王業 中興의 상징이자 천명의 승습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고려 내내 존속할 수 있었다. 경령전이 태묘와 다른 의의를 지니고, 이에 버금가는 공간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덕종 이래로 지속해서 행해진 嗣王들의 즉위 친고로 인한 것이었다.

한편 경령전에서는 즉위 주고 외에 여러 주고 행위들이 행해졌다. 이 중 태묘에서는 행해지지 않고 경령전에서만 행해지거나 경령전이 부각되는 의례들이 존재한다. 또한, 단발적인 奏告 행위 역시 다수 발견됐다. 이와 같은 주고 행위들이 경령전에서 행해진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태묘와 다른 경령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경령전과 태묘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태묘와 달리 경령전에는 국왕의 혈연상 사대고비가 모셔져 있다는 점 그리고 국왕이 거주하는 궐내에 자리한 시설이었다는 점이다. 경령전은 태조와 국왕의 사대고비가 모셔져 있다는 특징 아래 창건 초반 태자 納妃와 왕자 出家 등의 행위가 단발적으로 행해졌고, 이후 元子誕生賀儀, 王太子稱名立府儀 등이 경령전에서 행해지도록 예지에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더해 태조와 국왕의

사대고비가 모셔진 공간이자 궐내에 자리한 공간으로서 궐 안에서 행해지던 중요한 일들, 국왕의 단발적인 친고 등이 행해졌다. 또한, 예종 대의 정치적 상황과 궐내에 자리한 태조와 사대고비가 모셔진 시설이라는 경령전의 특성이 맞물려 부월 출환이 행해지기도 했다.

이처럼 경령전은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활용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해당 공간을 왕실의 공간이냐 국가 단위의 공간이냐를 나누는 것은 경령전은 파악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와 왕실을 나누는 시도 자체가 근대적인 시도이며, 어디까지가 왕실이고 국가인지 나누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개경 환도 이후 즉위를 고하는 것 외에는 경령전의 쓰임이 현격히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기록의 누락, 의례가 시행될 수 없었던 환경, 입지적 특성의 변화 등을 통해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몽골 침입 이후 경령전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례 행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보인다. 가령 몽골 침입 이후 궁에 있던 《古今詳定禮》 한 부는 불에 타 없어지고, 최충헌의 집에 남아 있던 한 부를 가까스로 남겨 이를 복사해 나누어 주는가 하면,[195] 충숙왕대의 태묘는 신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만큼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으며, 제사 의식 또한 규정에 맞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96]

이를 보았을 때 몽골 침입 이후 의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추후 몽골 침입 이후 당대의 흐름 속에서 경령전과 더불어 다른 시설들의 의례 행위와 기능 수행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95) 《동국이상국후집》 권11, 〈序 新序詳定禮文跋尾.〉
196) 《고려사》 권61, 지15 예3 길례대사 제릉 충숙왕 17년 6월 정미.

참고문헌

사료

1. 연대기·정사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宗實錄》, 《世宗實錄》

《續資治通鑑長編》, 《宋史》, 《漢書》

2. 문집

《東國李相國前集》, 《東國李相國後集》, 《東文選》,
《東人之文四六》

《龜山集》

3. 법전·예서

《國朝五禮儀》 《禮記》

4. 금석문

劉喜海·劉承幹, 1923 《海東金石苑》 附錄, 嘉業堂
허흥식 편, 1984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下, 아세아문화사

연구논저

1. 단행본

김아네스, 2019 《고려의 국가제사와 왕실의례》, 경인문화사
김지영 외 5명, 2013 《즉위식, 국왕의 탄생》, 돌베개
김용천, 2007 《전한후기 예제담론》, 선인
랜들 콜린스, 진수미 역, 2009 《사회적 삶의 에너지-상호작용 의례의 사슬-》, 한울아카데미
서정화, 2017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 한국학술정보
정옥자 외, 2007 《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조너선 스미스, 방원일 역, 2009 《자리 잡기 - 의례 내의 이론을 찾아서-》, 이학사
田銀生, 2011 《走向開放的城市-宋代東京街市研究》,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지두환, 1994 《朝鮮前期 儀禮研究》, 서울대출판부
채웅석, 2021 《고려중기 정치사의 재조명》, 일조각
피에르 노라, 김인중, 유희수, 문지영 역, 2010 《기억의 장소》 1, 나남
하워드 J 웨슬러, 임대희 역, 2005 《비단같고 주옥같은 정치》, 고즈원
한기문, 1998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한형주, 2016 《종묘와 궁묘》, 민속원
허흥식, 1986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2. 연구논문

강호선, 2019 〈고려 국가불교의례와 경행〉 《한국사상사학》62권
권기현, 2020 〈고려시대 閱兵의 시행과 그 의미〉 《군사연구》149

김상범, 2015 〈北宋 都城 開封의 儀禮空間과 都市景觀〉 《이화사학연구》 51
_____, 2016 〈北宋時期 景靈宮과 國家儀禮〉 《동양사학연구》 136
김선미, 2014 〈고려 문종대 王太子 冊封과 太子 관련 制度 정비의 의미〉 《역사민속학》 45
김순자, 2012 〈고려중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여진 전쟁〉 《한국중세사연구》32
김용천, 2007 〈前漢末의 廟議와 功德·宗變論 — 宗法관념의 변용과 확장 —〉 《중국고중세사연구》 18
김응종, 2011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나타난 '기억의 개념〉 《프랑스사 연구》 24호
김재명, 2012 〈高麗前期의 東宮侍衛公子〉 《사학연구》 107
김창겸, 2008 〈고려 顯宗代 東宮官 설치〉 《한국사학보》 33
김창현, 2011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학보》 41
김철웅, 2005 〈고려시대 太廟와 原廟의 운영〉 《국사관논총》 106
_____, 2009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32
_____, 2011 〈고려시대의 태자 책봉과 책봉례〉 《역사와 경계》 80
_____, 2015 〈고려시대 국왕의 즉위의례〉 《정신문화연구》 38
김호, 2005 〈唐代 太子府의 構造와 運用〉 《중국사연구》 36
____, 2005 〈조선 왕실의 '廟號' 개정을 통해 본 기억의 역사〉 《인간연구》 8
남창근, 김태영, 2011 〈고려 본궐 경령전 일곽의 성격과 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연합논문집》 13
남창근, 2020 〈고려 본궐 만월대 주요전각 위치와 배치체계〉 《중앙고고연구》 32
라정숙, 2014 〈고려시대 기신재의 설행과 의미〉 《한국사상사학》 47
민현구, 2006 〈예종의 국정운영과 궁중생활〉 《한국사시민강좌》39
박종기, 1993 〈예종대 정치개혁과 정치세력의 변동〉 《역사와현실》

9
山內弘一. 1985 〈北宋時代の神御殿と景靈宮〉 《東方學》 70
서정화, 2018 〈『춘추』 경문에서의 묘(廟)·궁(宮) 언급을 통한 주대(周代)의 그 쓰임 사례 일고찰 - 주대의 묘수제(廟數制) 실재 여부에 대한 궁구 과정에서【1-2】〉 《한국철학논집》 57
_____, 2018 〈『左傳』에서의 廟·宮 언급을 통한 周代의 그 쓰임 사례 一考察 - 周代의 廟數制 실재 여부에 대한 궁구 과정에서(2-2)〉 《유교사상문화연구》 72
윤기엽, 2013 〈고려 경령전(景靈殿)의 건립과 동향〉 《한국사상과문화》 69
_____, 2013 〈고려 혼전(魂殿)의 설치와 기능〉 《한국사상사학》 45
이바른, 2017 〈고려 예종대 胡宗旦의 행적과 평가〉 《한국민족문화》64
이범직, 1983 〈高麗史 禮志 「軍禮·賓禮」 의 검토〉 《명지사론》 1
이승민, 2016 〈고려시대 국상 절차와 삼년상〉 《사학연구》122호
이정란, 2021 〈고려 전기 국왕 諡號制의 그 내용과 의미〉 《한국사학보》 82
이정훈, 2009 〈고려전기 왕실 출신 승려들의 출가와 활동〉 《역사와현실》71
이현진, 2011 〈조선시대 종묘의 부묘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 43호
임민혁, 2004 〈묘호의 예제원리와 조선의 수용〉 《국사관논총》104
장동익, 2009 〈고려시대의 경령전(景靈殿)〉 《역사교육논집》 43권
장지연, 2016 〈고려 초 卽位儀禮와 喪禮를 통해 본 권위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7
佐川英治, 2015 〈中國中古の都城設計と天の祭祀〉 《中國古中世史硏究》 35
최봉준, 2020 〈고려 현종~정종대 왕실의 眞影 중심 조상 숭배 의례의 확립과 그 의미〉 《규장각》 56

최순권, 1998 〈高麗前期 五廟制의 運營〉 《역사교육》 66
한기문, 2008 〈高麗時代 開京 奉恩寺의 創建과 太祖眞殿〉 《한국사학보》 33
한정수, 2012 〈고려시대 태조 追慕儀의 양상과 崇拜〉 《사학연구》 107
_____, 2019 〈고려시대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 및 사환의(師還儀)의 성립과정과 내용〉 《군사》 110
홍영의, 2012 〈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 37

3. 학위논문

유희경, 2016 〈고려 현종대 경령전 설치와 그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고려개성궁성 시굴조사보고서》
_____, 2009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12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발굴조사보고서》 2
_____, 2020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발굴조사보고서》 3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Transformation of Characteristics of Gyeongneungjeon during the Goryeo Dynasty.

Eunji Maeng
Deartment of Korea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text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Gyeongneungjeon and the process of standardizing its rituals, with a focus on identifying the reasons for the continued existence of Gyeongneungjeon as the duplicate ancestral shrine. After ascending to the throne, the king enshrined his deceased parents in three different spaces. Firstly, he placed their spirit tablets(神主, sinju) in a designated area, secondly tomb underwent rearrangement, and finally, at the temple, they enshrined a portrait and performed ancestral remembrance ceremony(忌晨齋, gisinjae). Gyeongneungjeon,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8th year of King Hyeonjong's reign, was a newly built facility during the process where moral issues prevented the enshrinement of the spirit tablets(神主, sinju) of King Anjong and Queen Hyosuk in Taemyo.(太廟).

During its early construction, Gyeongneungjeon functioned as a "Honjeon(魂殿)," a place to enshrine the spirit tablets(神主, sinju) of King Anjong and Queen Hyosuk instead of the Taemyo(太廟). This circumstances supported by the difference in expressions when describing the enshrinement of their spirit tablets(神主, sinju) at Gyeongneungjeon and Hyeonhwasa in the inscription of the monument at Yeongchuisan Daejaeunhyeonhwasa, as well as the addition of posthumous titles in the 18th year of King Hyeonjong's reign(1017).

As time passed, Gyeongneungjeon, a place for enshrining the spirit tablets(神主, sinju) of King Anjong and Queen Hyosuk, converted into a space for enshrining the portrait of King Taejo and his descendants. This change was a measure taken by King Hyeonjong to ensure the continued existence of Gyeongneungjeon beyond his reign and to symbolize the lineage of the Hyeonjong royal family.

When King Deokjong ascended the throne, he personally held the coronation ceremony at Gyeongneungjeon, which was the most appropriate ritual to symbolize its significance. As the coronation ceremony for an ancestor demonstrated the legitimacy of the throne, King Deokjong's coronation at Gyeongneungjeon showcased the continuity of the mandate from King Taejo through King Anjong and King Hyeonjong to him.

The coronation of King Deokjong reaffirmed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Gyeongneungjeon as a representation of the prosperity of the royal authority and the divine mandate. If the rituals were effectively carried out, their symbolic importance would be internalized by the people. This can be seen in the fact that coronation ceremonies conducted by kings continued at Gyeongneungjeon until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As Gyeongneungjeon entered the late Hyeonjong period, its character changed, and various ceremonies other than the coronation were performed there. Various rituals were conducted at Gyeongneungjeon, including presentation and return of the axe, the celebration of the first birthday of a first prince the ceremony of announcing the prince bestowed a name and established a title, as well as ordination of a prince, lantern festival(yeondeunghoe), the farewell banquet of foreign envoys, and walking meditation (gyeonghaeng). These diverse rituals were carried out at Gyeongneungjeon due to its different principles of enshrining the portrait of the king's four generations of ancestors and its geographical location within the palace, unlike Taemyo(太廟).

On the other hand, after the capital was returned to Gaegyeong, the ritual activities at Gyeongneungjeon showed a reduced scale. This was because, unlike before, when it was situated within the palace, the distinctiv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Gyeongneungjeon disappeared, leading to a decline in its frequent and regular usage.

Keywords : Hyeonjong, Honjeon(魂殿), Gyeongneungjeon, Ascension to the throne, Ju-go(奏告), Standardization of rituals, Symbolic significance

Student Number : 2020-27212